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Ⅲ

-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협력조선인(1919~1937)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Ⅲ

초판 1쇄 발행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Ⅲ

-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협력조선인(1919~1937)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 간 사

옛사람들은 역사를 ‘거울[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이름에 ‘감(鑑)’이라는 글자를 붙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인식하여 후세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되기를 기대했던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분명히 밝혀 국민 대중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자는 우리 위원회 활동 목적은 서로 그 끈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3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 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크게 세 시기, 즉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를 제1기,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를 제2기,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를 제3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가 좌절한 후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증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또한 제1기 조사 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두 권의 사료집도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에 힘써서 대체로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자 선정을 매듭짓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의 계획대로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 제2기에 해당하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를 중심으로 모두 5권의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의 첫 번째 책(제3권)에는 조선총독의 훈시(訓示)와 유고(諭告), 치안유지법령,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언론계의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등을 수록했습니다. 제4권에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조선귀족’의 약력 자료와 관련 단체,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총독부 중추원의 회의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5권에는 일제가 편찬했던 조선반도사 원고 일부,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 관련 자료를 넣었습니다. 제6권에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실시한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인 친일파 양성책에 놀아난 국민협회·동민회·대정친목회 등 주요 친일단체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권에는 중국·일본·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해외 조선인 사회의 친일 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를 끓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민족의 과거 속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모두가 겪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다섯 권의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려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등이다.
다만,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이 주변민족으로 비하하고 자민족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국왕, 일본, 조선, 중국, 일본어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례

* 발간사	4
* 해제 : ‘문화정치’의 허울과 실상, 협력하는 조선인들	13

I. 일제의 조선 통치 방침

1.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훈시	35
2. 사이토 마코토 총독, 조선 통치 사견(私見)	37
3. 사이토 마코토 총독, 조선 통치에 대하여	45
4. 종래의 방침을 답습, 야마나시(山梨) 총독의 성명	49
5. 야마나시 총독의 성명에 대하여(사설)	49
6. 야마나시 총독,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청 직원에 훈시	51
7.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 각 도지사에 훈시	52
8.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훈시	55
9.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시정 25주년 기념 훈시	64
10. 우가키 총독 및 사이토 전(前) 총독의 기념 방송	66
11.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일 총독 유고(諭告)	71
12.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도지사 훈시	72
13. 취임 시의 총독 유고(야마나시, 사이토, 우가키, 미나미 총독)	77
14. 미나미 총독, 본기(本期)의 시정방침	81

II. 치안유지법

1. 법령과 해설	85
1) 치안유지법(1925)	85
2) 치안유지법 개정(1928)	86
3) 와카즈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치안유지법 제안 설명(귀족원)	87

- 4) 반도우 고타로(坂東幸太郎), 반대의견(중의원) 88
- 5) 와카즈키 레이지로, 치안유지법 제안 설명(중의원) 91
- 6) 조선사회운동단속법 요의(要義)(1932) 92
- 7) 개정 치안유지법안 해설(1935) 111
- 8) 조선·대만에서 공산운동자 겸겨 수가 최근 격증한 이유 115
- 9) 치안유지법 개정(1941) 116
- 10)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회의, 미나미 총독 훈시 125
2. 관련 기사 129
- 1) 독립과 적색(赤色) 기사는 학설이라도 단속할 수 있다
–검사장과 본사 기자 문답 129
 - 2) 일본 정치가의 고루(固陋)를 비웃음, 소위 치안유지법안(사설) 130
 - 3) 치안유지법과 조선의 관계(사설) 132
 - 4) 치안법 조선엔 꼭 실시, 사이토 총독 귀임담(歸任談) 134
 - 5) 조선독립운동에도 치안유지법을 적용, 야마오카(山岡) 정부위원 답변 135
 - 6) 치안유지법안과 보안법안(기사) 138
 - 7) 다시 치안유지법안 실시에 대하여(사설) 138
 - 8) 경찰정치와 사상단체, 치안법을 빙자하여(사설) 140
 - 9) 금일부터 실시하는 ‘특법’ 치안유지법, 우선 관계당국 의견 142
 - 10) 치안유지법 실시에 대하여, 파급되는 영향 여하(사설) 143
 - 11) 치안법의 해석에 대하여(사설) 145
 - 12) 조선의 사회운동, 금후의 추세는 여하(사설) 147
 - 13) 러시아에 있는 언론의 통제(상·하)(사설) 151
 - 14) 치안유지법에 관한 긴급칙령안(사설) 154
 - 15) 각 방면에서 반대하는 치안유지법 긴급칙령안(기사) 156
 - 16) 국체변혁 업별주의(사설) 157
 - 17) 치안유지법 개정안의 추부(樞府) 통과(사설) 159
 - 18) 치안유지법 개정에 대하여(사설) 160
 - 19) 조선독립운동과 치안유지법 적용 문제, 치안유지법·제령위반·보안법의 차이 점, 마츠데라(松寺) 법무국장 담(談) 162
 - 20)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1925) 163
 - 21) 치안유지법과 조선독립운동(1925) 171

III.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1. 동양척식주식회사	179
1) 동양척식주식회사 정관	179
2) 동양척식주식회사 업무지역 및 업무종류	189
3) 궁삼면(宮三面) 사건 관계	191
2. 산업조사위원회	199
1) 산업조사위원회 규정	199
2) 산업조사위원회 개황	200
3) 산업조사위원회에서의 총독 연술(演述)	201
4)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관한 건	202
5) 산업조사회와 향후 조선의 산업정책(사설)	208
6) 조선 산업조사회 개회에 제하여(사설)	210
7) 조선인 산업대회 건의안	212
8) 횡설수설(기사)	219
9) 산업조사회 결의안	220
10) 산업조사회의 결의안, 조선인 본위의 반대로 일본인 본위의 정책(사설)	225
11)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 및 계획에 대하여(1922)	227
3. 조선식산은행	234
1) 조선식산은행령 개정(1924)	234
2) 조선식산은행의 연혁과 임무	235
3)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정관(1936)	240
4) 조선식산은행 간부	249
4.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255
1) 토지개량사업 합병조건 발표(기사)	255
2)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설립 취의서(趣意書) 및 정관	256
3) 토지개량부의 폐지와 산미증식계획의 중지	262
5. 금융 관계 법령	263
1) 은행령 개정(1920)	263
2) 은행령 개정(1923)	264
3) 조선금융제도조사회 규정(1928)	265

- 4) 은행령 개정(1928) 266
- 5) 저축은행령(1928) 271
- 6) 금융조합령 개정(1929) 274
- 7) 저축은행령 시행규칙(1929) 280
- 8) 발포될 신탁업령은 현상을 참작 안할 듯, 따로 과도법규로 정리(기사) 284
- 9) 조선신탁업령(1931) 285
- 10) 조선신탁업령 시행규칙(1931) 291

IV.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 1. 조선교육령 개정(1920) 305
- 2. 조선교육령 개정(1922) 308
- 3. 조선교육령 개정(1929) 314
- 4. 조선교육령 개정(1938) 315
- 5. 조선교육령 개정(1943) 318
- 6.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1911) 320
- 7. 조선총독부시학관특별임용령 개정(1922) 320
- 8. 일본어 상용 여부에 따른 입학에 관한 건(1922) 321
- 9. 조선총독부 시학관 및 조선총독부 시학위원회 학사시찰 규정(1928) 322
- 10. 조선총독부 도 시학관 특별임용령(1930) 324

V. 언론계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 1. 신문·잡지의 발간 현황(1936) 329
- 2. 경성일보사 개황(1920) 338
- 3. 송순기(勿齋學人), 송이기수영창(頌以其壽永昌) 340
- 4. 홍승구(木春山人), 조선 언론계의 과거와 현재(1~3) 341
- 5. 홍승구, 평림(評林)의 평림 신문의 신문(1) 359
- 6. 이익상(李益相), 백두산 가는 길에 368
- 7. 이익상, 만주기행 370
- 8.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1921 · 1923년 사설) 372
- 9. 내선(內鮮) 양 민족의 관계를 논하노라(사설) 376

10. 매일신보가 본 반도 20년간, 을사에서 병인까지(연재기사의 일부) 378
11. 조선 통치의 정신(사설)
 - 의회에서 한 총감 답변 384
12. 논조(論組)에 오른 학교맹휴(상, 하)(사설) 385
13. 고마다(兒玉) 정무총감을 맞이함(사설) 388
14. 사이토 총독을 맞이함(사설) 390
15. 학생 제자(諸子)를 위하여(사설) 392
16. 우가키 총독을 맞이함(사설) 393
17. 홍승구(洪承壽), 오는 총독 가는 총독(1~5) 395
18. 홍승구, 육군기념일 407
19. 국민적 자각의 현현(顯現)(사설) 409
20. 조선 통치의 5대 지침(사설) 410

VII.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발췌

1. 김관현(金寬鉉) 415
2. 김명수(金明秀) 416
3. 김성수(金性洙) 423
4. 김용주(金用柱) 424
5. 김윤복(金允福) 431
6. 김택현(金澤鉉) 432
7. 남궁영(南宮營) 436
8. 민병석(閔丙奭) 439
9. 박영효(朴泳孝) 442
10. 박중양(朴重陽) 444
11. 박춘금(朴春琴) 456
12. 백흥기(白興基) 458
13. 석진형(石鎮衡) 459
14. 선우갑(鮮于甲) 462
15. 선우순(鮮于鍾) 463
16. 송병준(宋秉畯) 464

17. 신석린(申錫麟) 466
18. 심우섭(沈友燮) 468
19. 심형진(沈衡鎮) 475
20. 유일선(柳一宣) 477
21. 육종윤(陸鐘允) 490
22. 윤갑병(尹甲炳) 492
23. 이방협(李邦協) 493
24. 이완구(李完求) 495
25. 이진호(李軫鎬) 498
26. 장우근(張宇根) 503
27. 장현식(張憲植) 504
28. 조병상(曹秉相) 506
29. 최화주(崔華疇) 507
30. 한규복(韓圭復) 510
31. 한상룡(韓相龍) 514
32. 한창수(韓昌洙) 522
33. 홍승균(洪承均) 523
34. 홍준표(洪俊杓) 524

* 찾아보기 529

해제： ‘문화정치’의 허울과 실상, 협력하는 조선인들

이규수(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1. 일제의 조선 통치 방침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기존의 조선 지배정책이던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일본이 통치정책을 전환하게 된 배경은 일본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경기로 비약적인 공업발전을 이루었으나, 대전이 끝나자 일대 불황에 직면하게 된 점이다. 일본은 불황으로 누적된 잉여자본을 한반도에 대한 자본진출로 해소하고, 1918년의 쌀 소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조선미의 수탈을 증대함으로써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다.

1910년대 무단통치를 통해 식민지 수탈의 기초를 다진 일본은 3·1운동을 고비로 1919년의 회사령 철폐와 1920년대에 전개된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일종의 개발수탈주의로 지배 기조를 바꾸었다. 일본은 조선을 본격적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하부구조로 편입시켜 식량과 공업원료의 공급지이자 잉여자본의 투하시장, 일본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전환시켜 나갔다.

조선 경제를 일본 자본주의에 종속시키는 가운데 수탈을 더욱 심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현병경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그보다 훨씬 고도의 수탈성을 지닌 통치방식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이 문화정치라는 미명 아래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개발’을 동원구호로 내걸었던 것이나, 일본 상품의 조선 수출을 늘리고자 그 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한 선전광고로 ‘문명적 생활’을 표방했던 것도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일본이 통치정책을 이렇게 전환하게 된 근본 요인은 무엇보다 한국강점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조선인의 항일독립운동과 그 집약으로서의 3·1운동이다. 1910년대 일본의 폭압적인 식민지 수탈은 이완용·송병준 등 극소수의 친일적인 예속자본가를 제외한 모든 조선인을 무단통치의 적대세력으로 만들어 놓았다. 무단통치 말기에는 일본 자본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침해받고 있던 토착 상공업자는 물론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았던 지주들까지도 부등가 교환에 의한 수탈, 토지 기부의 강요, 회사령에 의한 민족자본으로의 발전 저지 등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급기야 거족적인 3·1 운동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의 통치정책인 문화정치는 이전까지의 식민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었다. 문화정치는 3·1운동 이후 고양되어 가던 반일독립운동에 대응하여 종래의 노골적인 무력지배를 완화하는 한편,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구호를 내걸어 식민통치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언론·출판을 허용하고 조선의 지주·자본가 계급의 일부를 정치·경제적으로 일본의 지배체제에 포섭하는 교묘한 분열통치방식을 구사함으로써 수탈을 강화하였다. 조선인을 일본에 동화시킨다는 식민지 지배의 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일본의 조선지배정책은 일본 독점자본의 이윤을 더욱 강화하고 민족적·계급적 모순의 격화를 회피하면서 조선 민중의 반제투쟁을 철저히 탄압하는 한편, 특히 민족부르주아지 상층부를 회유하여 민족을 분열 지배하는 데 그 기본 방침을 두었다.

3·1운동이 장기화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최초의 평민재상 하라 다카시(原敬)가 1919년 4월 경성으로 귀임하는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정무총감에게 훈시했던, ① 문관본위의 제도로 개정할 것, ② 교육은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동일방침을 취할 것, ③ 현병제도를 개편하여 경찰제도로 할 것, ④ 조선을 내지의 연장으로 인정하여 조선을 동화할 것’ 등의 개혁방침을 보면, 문화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하라는 그의 〈조선통치사견(朝鮮統治私見)〉에서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제도는, 구미제국이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그들의 식민지에서 택했던 제도를 참작하여 만든 타이완의 제도를 모방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언어·풍속·인종·역사가 거의 동일하므로 조선에도 일본과 동일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생각에서 그는 현병경찰제도의 폐지와 문관본위제도의 실시를 훈시하였다. 그러나 하라가 조선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구상한 것은 조선인의 복리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일제가 ‘문화정치’를 실시한 것은 경찰제도나 지방제도 등의 제반 개혁을 통하

여 현병 중심의 노골적인 무단통치를 보다 세련된 모습을 갖춘 경찰 중심의 정보정치로 바꾸고 친일세력을 육성해 탄압과 회유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통하여 수탈과 지배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본으로의 동화를 위해서였다. 문화정치를 내걸고 부임해온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발표한 시정방침인, ‘① 치안의 유지, ② 교육의 보급개선, ③ 산업의 개발, ④ 교통과 위생의 정비, ⑤ 지방제도의 개혁’ 역시 바로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정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회의 모순은 가중되었고 통치체제 또한 안정화되지 못하였다.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공황, 특히 장기적인 농업 공황에 의해 식민지 조선의 농업이 황폐화되고 농민의 경제적 몰락이 심화되었으며 민족해방운동이 고양되면서 조선인과 일본제국주의와의 계급적·민족적 모순은 격화되었다. 이것은 일본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또다시 지배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1931년 9월 일본제국주의의 중국대륙 침략이 시작되자 조선은 종전의 미곡 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했다. 일본제국주의는 군사적 파쇼체제를 확립하고 내선일체·황민화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일본은 대륙병참기지, 일·선·만(日·鮮·滿) 블록경제, 농공병진정책의 구호를 내걸고 군수물자 자원 확보를 위한 군사산업의 개발을 통하여 조선의 식민지적 예속화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조선 민중을 착취하고 자원을 약탈하는 데 광분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배방침은 우선 조선에서 민족주의·공산주의운동이 고양되어 일본제국주의와의 모순이 확대되는 것에 대처하여 조선인을 대륙침략의 첨병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황민화·민족말살정책을 뚜렷이 내세우는 한편, 조선인 지주·민족부르주아에 대한 매수공작과 그 보호육성에 힘쓰고 1920년대부터는 민족분열정책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1931년 6월 새로 조선총독에 취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발표하였다.

- ① 조선도 제국의 일부로서 세계적인 영향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상계의 혼탁에 가하여 경제계의 피폐가 초래되므로 일신 타개재건의 중요함을 인식할 것.
- ② 현재 비상시국에 처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국을 바라보고 시세를 달관하여 동양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은 자각해야 한다. 관·민을 물론하고 내선인을 불문하여 혼

화융합 일체일원이 되어 용맹심을 분기하고 풍부한 천부의 자원개척에 노력할 것.

- ③ 조선에 있는 종래의 시설은 각각 그 시세에 따라 다년간 연구하여 실시해온 결정 아니, 그 개변을 필요로 할 때는 신중하게 심의 조사를 거듭 행한 뒤에 실행하고, 일단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것은 일의 난이대소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맹진할 것.
- ④ 현재의 시세와 상황에 순응하고 항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신중하게 고구(考究)를 거듭하고 지엽말단에 구애됨이 없이 공론 허식을 배제하여 실로 엄정하게 선처할 것.
- ⑤ 이상과 신념을 갖고 실생활에 임하되, 현실을 응시하면서 장래의 문화와 경제의 조화를 꾀하고, 물심양면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을 것.
- ⑥ 이상의 취지로 기강의 진작, 민심의 작흥, 민의의 창달 및 과거를 능가하는 내선융화의 촉진을 도모하여 반도 일대의 기운을 더욱 명랑·쾌활하게 하고, 나아가 일반의 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기약할 것.

총독 우가키는 이어 192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수탈이 강화되면서 황폐해진 조선 농촌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파쇼화하는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았다. 즉 1932년 6월 도지사회의를 열어 ‘농산어촌의 진흥, 자력갱생의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11월에는 그 실시에 착수하였다. 이 방침은 일본의 농촌진흥운동과 보조를 같이하여 농업공황으로 파탄에 빠진 농촌의 부흥재건이라는 이름 아래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자력갱생운동을 일대 국민운동으로 전개한, 파쇼체제에 적합한 조선지배정책의 재편성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진흥·정신작흥을 표방한 이 운동을 일선융합·갱생조선의 월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조선총독부는 공사(公私)의 각 기관을 동원하여 사회교화·농촌진흥·자력갱생운동을 조선 전역에 퍼뜨리고 민족주의·공산주의 사상과 운동을 박멸·전향시킴으로써 내선일체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 치안유지법과 사상통제

1920년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민족의 사상과 독립운동을 단속하는 탄압법규로 종래의 보안법·신문지법·출판법·집회취체령·경찰범처벌규칙·총포화약류취체령 등을 구사하여 소위 ‘안녕질서의 유지’, 즉 제국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사·집회·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3·1운동 당시에는 제령 제7호를 공포하여 정치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으며, 더 나아가 1925년에 치안유지법, 1928년의 개정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철저하게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을 탄압하였다. 특히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구성원 및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또 “정(情)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치안유지법의 시행 이전 조선에서의 사상통제는 주로 보안법과 제령 제7호인 ‘정치범죄 처벌의 건’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법은 독립운동, 3·1운동과 같은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민족해방운동의 새 지도이념으로 수용되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전파되어가던 사회주의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조선의 안정적 식민통치를 바라는 조선총독부의 의지와 조선을 사회주의 사상의 완충지대로 설정하려는 일본 본국의 뜻에 따라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일본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치안유지법을 조선과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해 5월 12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1928년 4월에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치안유지법에서는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분리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이전의 최고 징역 7년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훨씬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새로운 목적수행죄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목적수행을 위해 취하는 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1934년 일본정부는 다시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는 사상범으로서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도가 포함되었는데, 두 제도는 이후 각각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으로 시행되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정부는 1941년 3월 보다 강화된 ‘개정 치안유지법’을 공포했다.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공산주의·무정부주의운동에 입각한 각종 결사를 탄압했다. 4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검거와 진우연맹·흑기연맹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주의·무정부주의 결사의 처벌이 이 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종래 제령 제7호로 처벌해오던 독립운동도 국체의 변혁에 해당한다 하여 처벌했다. 특히 독립운동은 해외의 정의부나 의열단 등 무력투쟁과 관계된 사건이 많아 살인·강도 등의 병합죄로 사형이 많았다.

1930년대 들어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 실시되면서 수양동우회·조선어학회 등의 온

건한 민족운동단체들에게도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으로 1935년까지 1,659건에 1만 7,713명이 검거되었는데, 이 중에는 무분별한 경찰권의 남용으로 검거된 사람이 많았다.

치안유지법의 실시로 일제의 사상통제정책은 비로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등경찰망이 확충되고, 1928년에는 사상범을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예심판사가 배치되었다. 또한 형무소는 잡범에 대한 사상 선전을 막기 위해 사상범들을 독방에 수용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무소를 증축했다. 한편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의한 엄벌주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상운동이 오히려 가속화되자 1933년부터 사상전향제도를 시행했다.

또 일제는 치안유지법 위반자의 기소유예·집행유예·가출옥·만기출옥자에 대해 그 사상활동을 단속하기 위하여 일거일동까지도 구속했고, 감시의 목적으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제정하였다. 경성·합흥·청진·평양·신의주·대구·광주의 7개소에 보호관찰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가로서 전향하지 않은 자를 소위 '사상범'이라 하여 사상보호관찰의 대상으로 삼아 '국체의 본의'를 체득할 것을 강제하였다. 나아가 1937년 2월부터는 사상보호단체 '대화숙(大和塾)' 등을 설치하여 사상범이 된 자는 무조건 가입을 강제하고 연좌식으로 감시를 받게 하였고, 1937년 7월에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계몽·선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는 목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조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3. 일제의 주요 경제정책과 기구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을 통해 조선 내 제국주의적 침략의 주도권을 잡은 일본에 의해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개항 이후 일본의 조선경제 진출은 개별 자본을 중심으로 국지적·산발적으로 침투하였지만,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선 전체를 자국의 경제권에 편입시켜 식민지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일본은 자국의 자본주의적 체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조선을 대상으로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에 나섰다. 생산과 상품교환에 기반을 둔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수탈에 초점이 맞춰진 식민지 경영의 대상국가 조선은 본국인 일본을 위해 식량과 원료공급지, 상품시장, 자본투자처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경제 체제가 재편, 정착될 필요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주도하는 개발, 즉 조선의 식

민지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졌다. 농업 부문에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비롯해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의 전시 식량공출체제가 이루어졌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원래 일본 농민의 조선으로의 이주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일본의 ‘동양협회(東洋協會)’에 의해 제안되고 그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에서 제정된 ‘동양척식회사법’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와 재계의 주도하에 자본금 1,000만 원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구한국 정부는 설립자본금 30%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출자했지만 일본 정부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여 일본의 국책회사로서 식민지 척식사업을 담당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1909년 1월부터 조선에서만 활동하였으나 1917년부터는 본점을 도쿄로 이전했다. 소유는 일본인에 국한하고 만동지역까지 활동했으며, 1938년부터는 타이완·사할린·남양군도 등으로 영업지역을 확장했다. 그 결과 1938년 말 현재 9개의 지점과 831명의 직원을 두었으며 일제 말기에는 수권자본금을 1억 원으로 증자하고 10개의 지점을 두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창립 당시 척식에 필요한 농업, 토지의 매매·임차·경영·관리, 건물의 축조·매매·대차, 일한 이주민의 모집·분배, 한국 농민에 대한 필요물품의 공급·생산과 획득물품의 분배, 척식자금의 공급, 일본 정부가 허가하는 부대사업 등을 총괄하였다. 그러나 1917년 동양척식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척식자금의 공급에 주력하면서 제반 척식사업을 경영했다. 실제로 1917년까지 토지수탈을 전제로 한 이주사업·농업경영·토지경영·토지개량·임업경영 등의 사업에 주력했지만 이후에는 금융부문을 확장하여 이 사업에 요구되는 자금공급을 증대하면서 산미증식계획을 지원했다. 1930년대 들어서는 광공업부문에 눈을 돌려 주식과 사채 인수를 통한 투자사업을 확장하면서 군수공업을 지원했다. 그런데 창립 초기 이런 사업은 토지와 현금 출자에 의존했으나 1912년 일본흥업은행을 경유한 프랑스 차관 2,000만 원 도입을 계기로 사채발행에 70% 이상 의존했다.

특히 이 회사채는 일본정부의 보증으로 일본에서 소화되었으며 그 규모는 납입자산의 10배, 1938년부터는 15배까지 확장될 수 있었고, 1944년에는 6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회사는 창립부터 토지수탈에 주력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토지 1만 7,714정보를 인계받은 후 토지매입을 서둘러 1913년까지 4만 1,148정보를 매입했다. 토지조사사업 완료 이후 국유지 불하에 힘입어 소유 토지는 1917년 말 현재 7만 5,178정보에 달해 조선총독부 다음의 대지주가 되었고 이로 인해 민원의 표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지속하여 1942년 말 20만 722정보를 소유했다. 특히 전답은 전라남도·전라북도·황

해도 · 충청남도 등 곡창지대에 집중되었다.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의 대표적인 식민지 산업정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당초 30개년 계획으로 총 80만 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종법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을 투자했으며, 대공황의 여파로 1934년에 중단되기까지 산미증식계획은 식민지 산업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나아가 수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하된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산미증식계획은 기본적으로 1918년 일본에서 일어난 ‘쌀소동’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기의 호황으로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공장노동자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쌀값이 폭등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 서민생활의 악화는 결국 1918년 생활난 구제와 쌀값 인하를 요구하는 전국 각지의 시위와 폭동으로 확대되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쌀과 같은 자포니카계인 조선쌀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과잉자본을 조선에 투입함으로써 당면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인 동시에, 지주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농정의 주체로 창출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에 시작되어 1934년에 중단되기까지 두 차례 시행되었으며, 토지개량사업(관개 개선, 지목 변경, 개간과 간척)과 농사개량사업(시비 증대, 우량품종보급)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부터 30개년 계획으로 총 80만 정보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종법을 개선할 방침을 세우고, 그 전반기에 해당하는 15개년 동안의 산미증식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했다. 이 계획은 15개년에 걸쳐 사업비 2억 3,621만 원을 투자하여 42만 7,500정보의 토지개량을 시행하고, 약 900만 석의 쌀을 증산하여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60만 석을 일본으로 유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92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약 200만 원의 사업비를 총독부 예산에서 지출하는 데 머물러 토지개량에 착수한 곳이 9만 7,500정보(계획의 59%)이고 준공한 곳은 7만 1,000정보(계획의 61%)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업의 진척이 부진했던 원인은 연이은 불황, 물가등귀에 따른 공사비 증대, 정부알선자금의 낮은 비중, 토지경영의 높은 수익률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곡생산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일본으로의 반출은 미곡생산량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반출했다.

이처럼 사업이 부진하자 조선총독부는 1926년부터 12개년 동안 ‘산미증식갱신계획’을 시행했다. ‘제2차 계획’은 향후 12개년 동안 사업비 3억 2,533만 원을 투자하여 35만 정보의 토지개량을 시행하고, 약 817만 석의 미곡을 증수하여 일본으로 이출하고자 했다. ‘제2차 계획’은 정부알선 저리자금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32% → 73%) ‘조선토지개량주식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제1차 계획'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했다. 그 결과 20년대 후반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30년대 들어서는 극히 부진했다. 1926~1929년에 5,751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개량에 착수한 곳이 4만 100정보(계획의 35%)이고 준공한 것이 9만 2,600정보(계획의 85%)였다. 1930년 이후 대공황의 여파로 정부알선자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쌀값 하락으로 수리조합의 경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농민들이 조선쌀 이입을 반대함으로써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도 해산하고 산미증식계획은 중단되었다.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증산된 쌀보다 더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쌀 단작농업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신품종이 들어오고 개량농법이 보급됨으로써 재래농법이 파괴되었으며, 농가의 비료 소비가 크게 증대했다. 그리고 지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인 대지주·조선인 대지주가 성장한 반면 조선인 중소토지소유자는 몰락했는데, 이는 농업금융의 편중, 과중한 수리조합비 때문이었다.

이 기간 동안 미곡의 증수실적을 보면 총 증수량은 목표액의 34%, 단보(段步) 당 증수량은 목표량의 79%를 달성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미곡의 대일이출은 급증하여 660만 석을 기록, 산미증식계획기간 이전인 1917~1921년에 비해 3배나 많은 미곡을 일본으로 내보냈다. 그리하여 조선인의 쌀부족을 메우기 위해 값싼 외미(外米)와 만주의 조를 다량으로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식량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산미증산계획을 통하여 조선쌀의 이출이 급증하였다는 것은 조선 내에서 미곡의 상품화가 급속히 전개되었음을 말해준다. 미곡의 생산과 상품화과정을 통하여 농민층의 계층분화가 촉진되고 조선의 농민경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 것이 산미증식계획의 가장 큰 역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미증식사업을 통하여 자작농과 중소지주는 점차 몰락한 반면,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었다. 농가 1호당 경작면적도 1920년대 후반 소작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작지는 그 이상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작면적이 감소함으로써 지주경제가 강화되고 농민층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계층분화는 일제가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통해 지주층에게 유리한 차별적이고 편중된 대출정책을 택함으로써 그 폭이 더 커졌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갑세 비율에 의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세정책을 취함으로써 지주들의 토지집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은 증산수탈정책

인 동시에 지주육성정책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일제 권력과 지주층의 정치적 결착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이토 총독이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지방제도를 개정하여 각 지방의 지주층을 각급 지방단체의 협의회원으로 포섭했던 것이나, 지주·자본가 층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우파세력을 일제 지배체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던 과정의 이면에는 산미증식계획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개발수탈정책과 지주층의 결착이 존재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결합이 바로 문화정치의 물질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4. 조선교육령하의 교육정책

일제는 병합과 함께 각종 법령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조선인의 근대적인 정치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고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시작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일제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민족교육의 억압과 황국신민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민족의식을 마비시키는 일이었다. 이러한 일제 교육정책의 변화와 황민화 교육의 강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기초가 바로 ‘조선교육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총독부는 이러한 황민화 교육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찰하기 위해 오늘날의 장학관에 해당하는 시학관을 지방에까지 임명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는데, 여기서 그들이 내세운 교육의 목표는 ‘천황’에게 충량한 ‘일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것, ‘일본국민’다운 품성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것, 민도(民度)에 맞는 보통교육, 특히 실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고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고등교육·인문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여 정치의식의 발달을 저지하고 고작 보통교육이나 실업교육을 통해 조선인을 그들의 통치에 순응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일제의 교육정책이었다.

조선교육령 내용이 제정되고 전면 개정된 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부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교육에 관한 칙령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는 일이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직후 총독부는 조선인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일본에 동조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정치를 실시했

는데,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란 이러한 의도에 맞는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어 보급을 위한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일본의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저급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양성하는 실업교육을 강조했다. 이 법령의 적용대상은 한반도 안에 있는 조선인에 한정되었고, 일본인과는 달리 보통교육이 4년에 불과한 것 등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설립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이전에 설립되었던 민족주의적인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규칙(1911) · 보통학교규칙(1911) · 고등보통학교 규칙(1911) ·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1911) · 실업학교규칙(1911) · 전문학교규칙(1915) 등이 잇달아 제정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무단정치에 항거하여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식민통치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1922년 2월 4일 칙령 제19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령의 특징은 민족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한반도 안의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게 하고, 수업연한을 늘리며, 이전에는 없었던 대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일본인은 소학교에, 조선인은 보통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여 민족차별은 여전히 진행되었다. 학제상으로는 보통교육의 경우 소학교와 보통학교 모두 예전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으나,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대부분 4년제였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에 관한 과목은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도 수업연한을 1년씩 연장했다. 사범교육은 이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실시되었던 것을 사범학교를 독립시켜 운영하도록 했고, 수업연한도 1년에서 남자의 경우는 6년, 여자의 경우는 5년으로 연장했다. 대학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어 1926년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으나, 조선인이 진학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으며 한반도는 군사물자를 조달하는 병참기지로 변화했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도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국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1938년 3월 3일 제3차 조선교육령이 칙령 제103호로 제정되었다(→ 황국신민화정책). 이 법령은 군국주의의 이념에 따라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그 이면에는 일본 천황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정치체제를 명확하게 인식시킨다는 국체명징(國體明徵), 조선인도 민족의식을 버리고 천황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이를 위해 충성스러운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도록 한다는 인고단련(忍苦鍛鍊)의 3대 교육강령이 작용했다. 이 법령에 의해 한반도의 교육은 일본 본토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모두

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각각 개칭되었다. 교육과정도 교과목·교육내용·교수요목 등에서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동일하게 했으나, 조선어는 선택과목인 수의과목으로 변경했고, 일본어·일본역사·일본지리·수신·공민 등 조선인에게 일본문화와 정신을 강요하는 교과목이 늘어나게 되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전시상황에서 황국신민화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1943년 3월에 칙령 제113호로 제정되었다. 소학교는 국민학교로 명칭이 바뀌었고, 중등교육의 수업연한이 단축되었다. 교육과정상으로는 선택과목이었던 조선어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일본어를 비롯한 다른 과목들은 예전보다 강화되었으며, 국민학교·중등학교·사범학교·전문학교·대학교 모두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군사기지화했다. 전쟁상황이 급박해지자 일제는 1943~1945년에 교육에 관한 전시비상조치방책,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 학도군사교육강화요강,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 학도동원체제정비에 관한 훈련, 학도동원본부의 설치, 학도근로령, 학도근로령실시규칙, 결전교육조치요강, 전시교육령 등을 공표하여 1945년 8월 해방될 때까지 학생들을 전쟁과 생산현장에 동원시켰다.

한편 일제는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였다. 조선총독부는 1911년 10월 대한제국시기의 ‘사립학교령’을 더욱 강화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여 학교 설립은 물론 교원의 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내용 등 교육 전반에 걸쳐 통제·감독을 엄중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학교는 강권으로 폐쇄시켰다. 그리하여 현병경찰의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봉쇄되었으며, 많은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아 폐교되었다. 총독부의 조사에 따르면 1910년 1,973개교였던 사립학교가 1919년에는 742개교로 대폭 감소되었으며, 학생 수도 8만 760명이던 것이 3만 8,204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1915년 3월에는 사립학교규칙을 대폭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교과 제한(종교과목의 배제), 일본인 교원의 채용, 교원의 제한(일본어를 할 수 없는 교원의 배제) 등을 행하고,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이라는 일제가 요구하는 교육방침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일제는 당시 사립학교와 함께 한국 민중의 민족의식과 애국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서당에 대해서도 1918년 2월 ‘서당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간섭·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서당규칙에 의하면 서당의 개설은 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했고 교과서는 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사용해야 했으며, 도지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서당규칙의 시행에 따른 폐쇄가 강행됨으로써 서당의 수는 1922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기 위해 교

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 민족정신이나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심어줄 만한 책자를 모두 압수하고 판매를 금지하였다.

1930년대 일본 독점자본의 본격적인 진출에 따른 수탈의 강화와 아울러 농촌의 토지집중화·농민층 분해에 따른 사회적 모순의 격화는 농민의 몰락과 궁핍으로 이어졌고, 결국 일제의 과잉상품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1년 총독으로 취임한 우가키는 물심양면에 걸친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특히 농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운동이 제창되어 식민정책의 핵심을 이루었다. 우가키는 조선이 일본을 배반하지 않게 하는 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 정신적·물리적 결합을 의미하는 물심일여(物心一如)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즉 농촌진흥운동을 통해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1930년대 초 우가키의 정책방침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융합일치, 이른바 내선융화의 진척과 조선인에게 약간의 빵을 주는 것으로 집약된다.

우가키의 정책기조는 종래의 융화교육을 통한 무차별적 동화와 실용주의·실리주의를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학교교육은 생활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확대·개편되었다. 첫째, 근로교육을 위해 ‘교육 즉 생활, 생활 즉 근로(教育即生活 生活即勤勞)’라는 표어를 내걸고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정책을 강력히 추구하였다. 둘째, 일본 국민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최고의 의무로 간주하여 사상의 안정과 문맹퇴치라는 명목으로 학교교육의 보급과 확대를 꾀하였다.

생활향상을 위한 근로와 사상교육의 강화는 초등학교에 직업과를 신설하고 공립보통학교 졸업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를 수행하며 농촌 간이학교를 창설하는 것 등으로 이어졌는데, 그 구체적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는 공립보통학교 아동에게 농업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술을 연마시키기 위해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농촌의 보통학교에서는 일반 농사 이외에 양잠·축산·농업수공 등을, 어촌에서는 수산제조, 산야촌에서는 농림수공과 약초제약 등 이른바 적지적업주의(適地適業主義)에 입각한 농어촌 부업훈련을 삽입하였다. 또한 교장 이하 일반 교사들에게도 강습회를 열어 농업경영의 실제와 짚세공·목공·잠실과 가축사 등을 짓는 기술 등을 익히게 하여 직업교육에 임하도록 하였다.

둘째, 보통학교 졸업생에 대한 지도는, 제1차 보통교육의 확대보급 계획의 결과 보통학교 졸업자가 누적되고 상급학교인 고등보통학교로 진학할 기회는 매우 한정되어 사회

적 불만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초등교육 이수자의 많은 유류인력을 농촌진흥운동의 중추로 동원하기 위해 제안된 독특한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도 요지는 보통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을 각자의 가정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 이었다. 지도 목적은 보통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을 심화·심성시키고, 농민의 몰락에 따른 농촌의 상대적 과잉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민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농촌에서 생활향상의 모범을 보여 농촌 개발과 부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보통학교 졸업생 지도는 주로 보통학교 교원들이 담당하였으며, 1935년 현재 1,403개소 12,982명(남 12,736명, 여 246명)이 이수하고 있었는데 수료자는 4,045명 정도였다.

셋째, 보통교육의 확대를 위한 간이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완성 교육의 성격을 띠었으며, 부락 중심의 2년제 초등교육기관이었다. 간이학교는 1면 1교 보통학교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적 빈곤으로 입학할 수 없는 아동을 수용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농촌의 문맹을 퇴치하고자 설치되었다. 즉, 간이학교는 정규 보통교육기관으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농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통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간이학교를 통한 보통교육 확대의 목적은 국어(일본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으며, 직업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가진 완전한 일본국민을 양성하는 데 두었다.

이렇게 볼 때 간이학교는 ‘내선융화’를 강화하기 위해 적은 재정부담으로 가능한 한 많은 아동을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서당이 맡아온 교화적 역할을 대신하고자 시도된 것으로, 서당에 대한 식민지배를 위한 대체기관적 성격을 띠었다. 1930년대 들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 초기에 보통교육기관의 보완적 기구로 활용해왔던 서당교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즉 “농어촌 아동의 대부분이 반영구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서당교육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개탄하고, 아동의 보통교육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서당이 지역 사회에서 가져왔던 부락의 진흥과 교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간이학교에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로 함경남도의 한 간이학교는 군과 면의 협력과 원조를 얻어 농사의 개량부업을 위해 부락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학교건물을 하루도 그냥 비워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아동 61명, 부녀자 야학생 40명, 유년부 아동 45명을 수용하는 등 전 부락민의 교화 기능을 수행하였다.

간이학교는 2학년 1학급의 단급학교이며 1교 1교원으로, 교사는 해당부락에 정착하여 주거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조직상의 특성을 가졌다. 간이학교의 교과목은 수신(修身)·일본어·조선어·산술의 보통교과와 직업 등의 네 과목이 부과되었으며, 보통교육

과 직업교육의 구성비율은 2 대 1이었다. 이와 같이 간이학교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엄격했던 이유는 간이학교가 공립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을 부여받거나 보통학교의 준비기관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 완성교육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간이학교의 완결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 일본에서 온 교육 시찰자나 국내의 일부 지식인들은 그 타당성과 효과면에서 환영하였으나, 다수의 조선 민중은 빈약한 학교시설과 수업연한의 단축 등을 들어 비난하였다. 간이학교는 중등학교 진학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게 크게 환영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간이학교는 1934년 440개교, 1935년 220개교, 1936년 220개교 등 모두 880개교가 개설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번성하기도 했지만, 총독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넷째, 1932년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을 부령(部令)으로 개정하여 종래의 ‘법제·경제’ 과목 대신 공민(公民)과 실업교과를 신설하였다. 이때 신설된 공민과목은 수신교과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서,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할 때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로 확산시켰다. 공민과는 교과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일본)의 국체(國體)와 국헌(國憲)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공민적 생활을 완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습득시키고, 특히 준법봉공(遵法奉公)의 신념을 향상시켜 건전한 황국신민다운 자질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 식민지배의 중핵 교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실업학교 중에서도 특히 농업학교를 증설하는 등 농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농촌생활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펼친 영향을 받아 1930년대 초 농업학교 지원자는 다른 중등학교의 6~7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31~1936년 6개교를 증설함으로써 농업학교는 모두 31개교에 이르렀다. 또한 2년제이던 농업보습학교를 1년 과정으로 단축하고 모든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도록 개정하여 단기간에 중등수준의 농업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 진흥에 응용하려 했다.

그 밖에도 일제는 실업보습학교 교원양성교육을 강화하였다. 1927년에 설치된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교원양성소는 농업보습학교에 대한 교원공급을 목적으로 한 1년 과정이었으며, 주로 현직 초등교원을 수용하여 배출하였다. 1935년에는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교원의 입소를 막고 입소자격을 고등농업학교와 농과대학 졸업자로 제한하였으며, 조선농업의 실태를 체득시켜 농업학교와 농업보습학교를 비롯한 농업관련 혼련기관의 교원으로 채용하였다. 특히 그 다음해에 수원고등농림학교 부설 교원양성소를 관립으로 승격시킨 것만 보더라도 교원양성의 성격과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실업학교

의 확대는 1935년 이후 실업학교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노골화된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은 1937년 중일전쟁 도발을 기화로 무차별 동화를 확대하여 민족말살정책과 함께 식민지 수탈정책도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식량·원료 공급지와 잉여상품의 독점적 판매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진출해 있던 일본의 독점자본 이외에 새로이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군수공업이 상륙함으로써 식민지 학교교육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집중되었다. 즉 전쟁을 뒷받침하는 일본과 조선의 정신적 유대 또는 사상적 통일을 위한 황국 신민화 작업을 수행하고 군수산업에 동원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南次郎)는 기존의 농촌진흥운동을 뒷전으로 미루고 황민화를 위한 무차별 동화정책을 확대·강화하여 국체명징·선만일여(鮮滿一如)·교학 진작(敎學振作)·농공병진(農工併進)·서정쇄신(庶政刷新) 등 이른바 5대 강령을 시정의 근간으로 하였다.

전시기(戰時期)의 교육방침에 따라 일제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고 종래 일본에 적용했던 각급 ‘학교령’을 특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학교 명칭을 보통학교는 소학교, 고등보통학교는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변경함으로써 조선인 학교와 일본인 학교 명칭을 통일한 것과 교과목·교육과정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학교 교과서는 일본 문부성에서 편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일제가 학생들을 침략전쟁에 총동원하면서 학교교육은 급격하게 군사체제로 편입되어 갔다. 1941년 일제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여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고 조선어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폐지시켰다. 1943년에는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각 학교의 교육 목적을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민의 연성(鍊成)’으로 집약하였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침략전쟁과 함께 ‘연성교육체제’와 ‘학도동원체제’로 전환되었다. 즉, 군사적 가치가 학교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은 군사능력을 배양하고 국방력을 증강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으며, 각 학교는 노동력 편성과 공급의 장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은 수업 연한을 단축하거나 문과계 전문학교를 실업과 기술 관련학교로 전환하려 했고, ‘학도근로령’의 공포에 따라 학생들은 노동동원이라는 명목으로 육체노동과 생산현장에 강제 동원되었다.

교육을 전시동원체제로 전환시키면서 1943년 조선총독부는 학무국을 개편하여 기존의 학무과·편수과 이외에 사회과·연성과(鍊成課), 그리고 중견청년훈련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사회과는 군사보호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주택·사회복리 및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연성과는 청소년의 훈련, 육군병 지원자 훈련, 청년특별연성과 지도자 연성, 국민연성과 국민노동교육, 사회교육·교화, 종교와 경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했다. 중견청년훈련소는 주로 초등학교 졸업자를 비롯한 중견청년을 대상으로 군사 예비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5. 언론계 상황과 매일신보

3·1운동 이후 ‘문화정치’의 기류 속에서 민간지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는 무단통치시기에 조선인들이 발행하던 신문들을 강제로 폐간시키고 조선인 발행의 새로운 신문 창간을 일절 허용하지 않던 종래의 방침을 바꾸었다. 1920년 신문지법에 의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의 일간지 창간을 허용하였다.

조선인에 의한 신문 창간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일제의 문화정치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 바로 문화정치의 핵심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 민간지의 창간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민족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을 허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서 지적한 유화정책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이 신문들을 통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일제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인에 의한 신문 창간을 허용하게 된 요인으로는 첫째, 3·1운동으로 이반된 식민지 민중의 환심을 사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완전 봉쇄해왔던 신문의 창간을 허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언론매체를 애타게 기다려온 식민지 민중에게는 충분히 유화조치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신문이라는 공개적 언론매체를 허용함으로써 이를 통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었다.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저항운동에 직면했던 일제는 왜 이러한 큰 사건이 터지도록 민심의 동향을 까마득히 몰랐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다. 무단통치 기간 중 조선 민족의 언로를 봉쇄했던 것은 일제 당국으로서도 민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셋째, 신문을 허용하는 것이 지식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총독부 당국이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3·1운동을 전후하여 지하신문 형태로 비합법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지식인들의 언론활동을, 민간지 창간을 허용하여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동태를 파악하고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1920년 일제에 의해 민간지의 창간이 허용된 것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그들의 식민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는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정책적 필요가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존재했던 한글신문은 『매일신보(毎日申報)』 하나 뿐이었다. 『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 영국인 배설(裴說, Ernest Thomas Bethell)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일제가 사들여 국권침탈 직후인 1910년 8월 30일부터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매일신보』로 개제(改題)한 것이다. 경영상으로는 일어판 기관지인 『경성일보(京城日報)』에 통합시켜 『경성일보』의 일본인 사장과 편집국장 밑에 두었고, 일제의 조선통치를 합리화하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주장하는 논조로 발간되었다.

1920년 초까지 무단정치 기간에는 『매일신보』가 유일한 한글 일간지였으므로, 이 신문에 이인직(李仁植) · 조중환(趙重桓) · 이해조(李海朝) · 이상협(李相協) 등이 신소설 또는 번안소설을 발표하였고, 이광수(李光洙)가 처녀작 『무정(無情)』, 『개척자(開拓者)』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20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민족지가 창간된 후로는, 민족지와 대립된 논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1920년에는 편집국을 『경성일보』 편집국에서 분리시켰고, 1930년에 처음으로 조선인 부사장이 임명되었으며, 1938년 4월 16일 『경성일보』에서 완전 독립된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호도 『매일신보(毎日新報)』로 바꾸고 최린(崔麟)이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매일신보』의 자매지로는 『월간매신(月刊每申)』(1934.2), 『매일신보사진특보(毎日新報寫眞特報)』(1938.11), 『국민신보(國民新報)』(1939.4) 등이 발간되었다. 1940년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강제 폐간된 뒤에는 1945년 광복될 때까지 다시 유일한 우리말 일간지가 되어 일제의 침략전쟁과 민족말살정책을 대변하였다.

6. 사이토 총독과 협력조선인

일제강점기에 친일협력행위를 한 자들은 크게 지주 · 자본가, 지식인, 경찰 · 관료 · 군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자진해서 친일을 한 자도 있고, 피동적으로 친

일을 한 자도 있었다. 친일 지주·자본가들은 국방비, 비행기와 금품현납, 총독열전각(總督列傳閣) 건축 등 친일활동을 하는 한편, 도·부·읍·면 의원이 되어 일제가 조선을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 임전보국단·총력연맹·시국대책조사위원회 등 의 친일단체에 가입하여 친일을 선동함으로써 일제의 수탈에 동조했다. 이들 중에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친일행동을 한 자들도 있고, 또 다수는 그들의 계급적 이익과 식민체제 속에서 수동적으로 자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민족사회의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들 중에 친일행위를 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조선문예회·조선문인협회·조선임전보국단·국민총력조선연맹 등의 친일단체에 가입하여 이들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해 지원병·학병 지원을 선동하고 강연·방송·좌담회·담화발표 등을 하여 내선일체·황도정신 고취, 총력체제의 생활화나 내핍을 강조했으며, 한편으로는 시·소설·수필·논문 등의 친일작품을 썼다. 또한 유명 미술가들 중에 일제의 전시체제에 맞추어 전쟁동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림을 그리는 친일미술파가 등장했다. 이러한 지식인의 친일행위는 국민의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데서 지주, 자본가나 경찰, 관료·군인의 친일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한편 일제식민체제의 상징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친일계층으로는 경찰·관료·군인이 있었다.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의 말단집행요원인 경찰로 충원된 조선인은 식민정책, 즉 민족말살정책과 민중수탈정책을 직접 집행했다. 즉 일제의 손발이 되어 조선인에 대한 인적·물적 수탈을 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사상범 등의 검거·색출·투옥·고문을 자행했는데, 이는 일제가 직접적인 악행을 조선경찰의 손에 의해 저지르게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도모하려는 정책에 말려든 결과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친일을 한 관료층으로는 고등문관 출신의 고급관료와 면장·면서기 등 말단관료로 나눌 수 있다. 고등문관 출신의 관료는 주로 군수·변호사·검사 등을 하면서 식민체제에 기생하는 존재로서, 고등경찰과 함께 친일파의 대표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말단 면장·면서기와 동회 직원들은 경찰과 협조하여 식민통치의 인적·물적 수탈정책을 직접 수행했다. 또한 일본 군인이 된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민족의식이 있거나 독립운동과 연계를 맺으며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

이와 같이 친일행동을 했던 조선인들 중 상층부는 일제의 ‘문화정치’ 기간 동안에 조선통치의 최고사령관이라 할 수 있는 사이토 총독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물심양면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 조선인이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각종 서한이 일본 국회도서관 현정자료실 ‘사이토 마코토 관계 문서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단순한 안부인사에서부터 자신과 가족 친지들의 입신영달을 위한 청탁, 일제의 조선통치 방향과 각종 시책

에 대한 견의와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책에서는 그중에서 ‘친일성’을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편지들을 중심으로 가려 뽑아 수록하였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한국사 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1.
, 『한국사 50－전시체제와 민족운동』, 국사편찬위원회, 2001.
-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개정판), 박영사, 1988.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수요역사연구회, 『식민지 동화정책과 협력 그리고 인식－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20~30년대』, 두리미디어, 2007.
-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 정병욱, 『한국근대금융연구－조선식산은행과 식민지 경제』, 역사비평사, 2004.
- 최우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II

I . 일제의 조선 통치 방침

1.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훈시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훈시(訓示)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국가 중대 시국에 즈음하여 조선총독이라는 대명을 받들어 두렵고 황송스럽다. 재주도 없고 미력하여 이러한 대임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두렵지만, 여러분의 협의(協翼)을 얻어 주야로 정진하여 대명에 보답하고자 한다.

조선 통치의 대방침은 1910년 일한병합 때에 이루어졌다.

메이지(明治) ‘천황’의 조서(詔書)에 따라 이루어진 종래의 총독부 관제 및 제반 행정 시설은 모두 성지(聖旨)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각 선임자의 노력과 국민의 분려(奮勵)에 의해 화평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하여 교육·산업·교통·위생·사회구제 등 각 방면에 걸쳐 면목을 일신한 것은内外가 모두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금은 병합이 이루어진 지 벌써 약 10년을 경과하였다. 그 당시에는 적절하고 유효했던 제도 및 시설이 시세의 진운(眞運)과 조선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새로이 관제를 개정하여 지난달 20일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관제 개정의 취지는 폐하의 우소(優詔)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한병합의 취지에 기초한다. 각기 일시동인(一視同仁)하여 마땅한 것을 얻으며 그 생을 보존하여 휴명(休明)의 은택을 누리기 위해서 시세에 맞추어 시정(施政)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데 있다. 즉 총독은 문무관 중에서 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현병에 의한 경찰제도를 대신하여 보통 경찰관에 의한 경찰제도로 바꾸었다. 또 복제를 개정해서 일반 관리와 교원 등의 제복 대검(帶劍)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 등을 고려하였다. 요컨대 문화적 제도의 혁신을 통해 조선인을 유도·제시(提撕)하여 행복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장래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에 따라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서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성은이 이토록 넓고 광대하니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불초(不肖)는 관제 개정을 전후하여 새로운 대명을 받들었다. 이는 다름 아닌 대조(大詔)를 받들어 제도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성심성의껏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성지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조선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한다. 시정의 구체적 방침에 대해 더욱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의 솔직한 진언을 기다려 차츰

결정해야겠지만, 먼저 몇 가지 기본방침에 대해 유의(留意)를 청하고자 한다.

관리는 일심동체를 근본으로 삼아 상하 모두가 협동 진력하여 공명정대한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 총독부 내의 각 국과(局課) 및 총독부와 지방청은 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각자 일관된 의기(意氣)로 연락을 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몸가짐은 근엄, 정직, 불편부당, 각종 정폐(政弊)를 없애고, 오로지 정리(正理)와 공도(公道)로 나아가 민중이 시정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대의 진운과 민심의 귀향(歸嚮)을 고려하여 행정과 사법 사무 제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를 바란다.

하나, 형식적 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고, 법령은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한다. 성의로 국민을 유치하여 그 정신의 철저를 도모하고, 행정처분은 상황과 민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하고 피처분자의 양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 사무의 정리와 간결에 힘쓰며 민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관청의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 언론·출판·집회 등에 대해서는 질서 및 공안의 유지에 방해가 없을 때에 한해 이를 고려하여 민의의 창달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 교육·산업·교통·경찰·위생·사회구제·기타 각 방면의 행정을 쇄신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새로운 방면을 열기 바란다. 특히 지방의 민풍 함양 및 민력의 작흥(作興)은 지방단체가 힘을 쏟아야 하므로 앞으로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목적으로 신속히 그 조사연구에 착수하고자 한다.

위의 개선 쇄신은 단지 신기(新奇)를 자랑하거나 시류를 추종하려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한 조선의 문화와 오랜 관습을 존중하여 좋은 점은 육성하고 나쁜 점은 제거하여 시세의 진운에 순응하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민생민풍을 개선하여 문명적 정치의 기초를 확립하려는 취지이다.

제도 개정과 더불어 인심의 일신(一新)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모름지기 성지를 만들어 솔선하여 몸소 실천하고 그 모범을 보여야 한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항상 일가의 부모와 동포의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화목해야 하고, 특히 조선인은 심신을 연마하여 그 문화와 민력을 향상시켜 더욱 성대(聖代)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 이 기회에 협력 일치하여 조선 통치의 쇄신을 더욱 도모함으로써 성명(聖明)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919년 9월 3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19년 9월 4일〉

2. 사이토 마코토 총독, 조선 통치 사견(私見)

조선 통치 사견

– 내치동화(內治同化)의 입장에서 통치방침을 말하다

하라(原) 수상

조선 통치 사견(상)

조선은 처음에는 독립국으로서 교제하다가 이후에는 보호국으로 통치하였고, 마침내 1910년 8월에 병합하여 우리 일본의 판도에 귀속되었다. 보호국 시대는 그렇지만, 병합 이후 조선에 대한 제도는 대체적으로 대만을 모방하였다. 모방한 대만의 제도는 1894, 1895년의 청일전쟁의 결과 비로소 우리 영토가 되었는데, 당시 우리는 신영토를 통치한 경험이 없어서 구미제국의 식민지에 대한 여러 제도를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내가 대만사무국에 참여하여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조선제도의 특성을 논할 경우에는 그 모방한 대만의 제도를 참조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만의 제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영토를 통치한 경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구미제국의 식민지 제도를 참작했을 뿐, 우리 제국의 신영토에 대한 근본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대체로 구미의 식민지 제도를 시험 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만이든 조선이든 현행제도를 영구불변의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처음부터 오해이다.

대만이 우리의 신영토로 귀착된 이래로 20여 년, 쇄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조선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조선의 병합 후 약 10년의 경험에 의하면, 현행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삼는 구미제국의

식민지는 우리 제국의 조선에 대한 것과 전혀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미제국에 속하는 식민지는 인종, 종교, 역사가 다르고 언어와 풍속도 다를 뿐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제국과 신영토인 조선과의 관계를 보면, 언어 풍속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동일계통에 속한다. 인종은 원래 차이가 없고, 역사도 상고(上古)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동일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토를 구미제국이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더구나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특수한 영토를 통치하는 제도를 모방하여 이 밀접한 신영토를 통치하려는 것은 큰 과오이자 그 성과 또한 당연히 좋지 못하다. 이번 소요도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보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견은 조선에도 일본과 완전히 동일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행정상·사법상·군사상, 기타 경제·재정의 면에서도, 교육지도의 측면에서도 완전히 동일해야 한다. 이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현재 조선인의 상태를 보면 쉽게 일본인으로 동화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도 동화할 수 있는 근본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을 통치하는 원칙은 일본 인민을 통치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방침으로써 근본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단지 문명의 정도, 생활의 상태 등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행할 수 없다면, 점진적으로 진행시키는 방침을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간에는 조선에 자치를 허용하자고 논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부현제(府縣制)·시정촌제(市町村制)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 자치의 영역에 도달하기를 바라더라도 구미제국의 신영토에서와 같은 자치를 시행하자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조선에 대해서는 이상의 논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사정상 근본적으로 어렵다.

또 조선이 걸핏하면 독립을 기도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대선(對鮮)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이는 그들이 항상 우리에게 반항하고 독립을 계획한다는 우려를 낳는 것으로 아주 우둔한 정책이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독립을 잊은 인민이 독립한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수세기를 통하여라도 전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그 통치 하에서 행복과 안녕을 얻고 향상, 발전하는 이상, 그들이 과거를 회고할지라도 그 때문에 반역을 기도하는 자는 대체로 없을 것이다. 원래 약간의 불손한 무리들이 국민을 선동하면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대국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 병력이 굳건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에 민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걸핏하면 독립을 기획한다는 의구심을 버리고, 또 종래 다른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오류를 배척하여 조선을 동화시키는 방침으로 여러 제도를 쇄신하는 것이 오늘날 가장 적절한 조치이자 또한 병합의 목적도 비로소 달성하는 것이라 믿는다.

조선 통치 사견(하)

조선 통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과 같게 하는 데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곧바로 일본과 동일한 통치법을 실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즉 이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계로(系路)로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빨리 시행해야 할 요점이라고 믿는다.

1. 조선총독은 여전히 총독으로 칭할지는 별도로 치더라도, 어쨌든 조선을 통괄할 자는 문무관 누구라도 지장이 없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현행 총독제도는 대만을 모방한 것이다. 대만은 외국의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이미 서술한 바이지만, 더욱이 소위 외국제도 중에서 어떤 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인가 하면, 영국 식민지의 총독을 참작하고 그 위에 러시아의 총독정치를 가미한 것이다. 물론 이 제도를 영구한 제도로 삼을 수 없다. 오늘날은 그 명칭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성질을 고쳐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일부는 조선병합 당시의 조칙에 총독을 두고 문무를 총괄한다는 뜻을 기재한 것에 의거하여 영구히 총독을 두고 문무의 권(權)을 장악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오해이다. 이 조칙은 당시의 조치임에 불과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앞으로 영원히 조선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2.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과 명령은 가능한 한 일본에서 실시되는 법률과 명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 즉 일본에서 실시되는 법률과 명령의 일부나 전부, 혹은 다소의 수정을 거쳐 시행한다는 원칙을 세워야만 한다. 조선총독에게 제령 제정의 권력을 부여하여 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과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은 큰 과오이다. 제령 제정은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률과 명령이 조선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그 결점을 보충하거나 혹은 특별히 필요한 사항 때문에 제정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제령 제정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방침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3. 현재 조선에 어느 정도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방과 같은 일정한 방침은 일본 당국자가 만든 것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현재 실제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이나 대장(大藏) 등의 사무는 완전히 일본과 아무런 교섭이 없다. 이는 행정상 정당하지 않다. 조선에 특별한 사법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그 제도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고 가능한 빨리 일본 대심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또 대장 사무는 병합 당시 열국에 대한 성명에 의거하여 열국과 조선과의 조약을 존중하여 특별한 관세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제 과거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 사무는 대장성(大藏省)이 관장해야 한다. 특히 은행 사무 중 대장성이 대만은행을 감독하면서 조선은행만은 특별히 대장성의 감독 밖에 두는 것은 일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영토 내에서 극히 온당치 않다. 은행 감독은 가능한 한 빨리 대장성에 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관세나 은행 즉 재정 경제에 속하는 일은 우리 영내의 어떤 지방을 불문하고 동일한 제도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무는 신속히 그 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제도, 즉 일본의 부현제 · 시정촌제는 결국 이를 조선의 통치방침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먼저 시정촌제와 유사한 제도를 창정(創定)하여 이를 실시하고, 이후에 부현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 오키나와 현에서 이와 같은 변칙적인 제도부터 시작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적당하다. 조선인이 총독부의 압박을 심하게 호소하는 오늘날, 그들에게 위안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시정촌제를 제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점차 부현제로 나아간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현재의 급무이다.

5. 경찰제도는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현병제도가 주된 목표이다. 총독부에서 전국을 통일하는 이 제도는 일견 지극히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그 통일이 전국적으로 철저히 실시되지 않아 오히려 부진을 초래하였고, 특히 조선인은 물론 외국인의 비난이 많았다. 이토(伊藤) 통감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할 당시의 사정에 대해 경찰력을 증가하려고 했지만, 그 인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내각에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육군대신이었던 데라우치(寺内) 백작은 사정이 그렇다면 현병을 사용하는 편이 신속히 편제할 수 있고, 또한 아주 편리하다며 현병제도를 시행하였다. 즉 나는 이 제도의 발양(發揚)에 대해 당시 내각에 있었으므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다. 이 제도가 병합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실시되리라고는 당시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병합 후

조선의 구(舊)병졸을 보조현병으로 사용한 것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 즉 당시에는 응급적인 제도였지만 지금은 실로 유해무익하다. 단연코 현병제도의 개정이 곧바로 필요하다. 그 방침으로는 현병을 폐지하여 경찰관으로 바꾸고, 경찰관도 총독부에서 통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장관에 소속시키고, 중앙의 총독부의 내무경찰 당국과 같은 것에 소속시켜 통괄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병제도에 나쁜 폐해가 많다면 □□□□□ 이를 폐지 □□□□.

7. 조선에서 구(舊)거류지 구역도 철폐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잡거할 것이므로 구거류지는 이후 인구가 증가하여 번영하면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조선인총락을 격리한 것이다. 즉 일본인의 주거를 위해 부근의 조선부락을 지방으로 옮긴 실황은 아무래도 잘못된 정책이다. 일정한 시가(市街)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잡거해야 한다. 또 조선인과의 혼인은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호적

법은 공공연히 이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40 제국의회에서 공통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소 결점은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잡혼을 허락하는 방침을 취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그들을 동화시킬 수 없다. 잡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잡거 또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

8. 관리의 등용은 본래 적재(適材)를 적소(適所)에 상용하는 것에 있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재는 위치나 봉급에서 일본인과 조선인과의 사이에 차이가 심하다. 이는 조선인이 불평을 품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동화시키는 방법도 아니다. 진실로 관리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조선인을 일본의 관리로도 등용해야 한다. 조선에서 더욱이 지금처럼 차별을 받는 것은 행정상 온당하지 않다. 지방에 대소의 구별은 있지만 이러한 점에서는 오키나와인이 어느 곳에서든 자격이 있다면 관공리가 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것이 가장 적당한 조치일 것이다.

9. 조선의 토지는 여전히 개발해야 할 곳이 많다. 수제(수리제도) 시설을 하는 것만으로도 개간의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 토지개간에 관해 조선인의 원망을 들어 보면 일본인의 주거를 위해 조선인이 경작해야 할 토지가 없어지고, 살아야 할 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도나 그 밖의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소 과장된 말이지만 사실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융화하고 함께 이익을 향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제로 커다란 잘못이다. 조선의 토지를 개간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등하게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선에서 □□이 없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에 관해서도 가장 주의해야 한다.

11. 조선병합 당시에 조선 귀족이라는 자를 만들어 일종의 귀족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귀족을 일본의 귀족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작(授爵)에 있어서 병합에 관계한 자만을 화족으로 삼고 지방의 명족(名族)은 일체 고려하지 않았다. 화족을 각별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사실도 존재하는 만큼 비슷한 것은 이번에 실제 지방 명족에 대해서도 수작의 은전을 베풀어 단지 당시 병합에 관여한 소위 친일당(親日黨)만으로 하지 않고, 공평하게 조선의 명가 구가(舊家)도 은혜를 입는다는 방침을 취하는 것은 조선 인심을 얻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 조선에 실시되는 형법은 일종의 다른 법이다. 형사소송법 등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은 가능한 한 일본의 형법을 실행해야 한다. 다소의 변경은 있겠지만, 적어도 그 원칙은 동일해야 한다. 조선은 수백년간 악정이 펼쳐진 나라이므로 형벌 또한 지극히 준열(峻烈)하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의 형벌은 가혹하지 않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인과 비교하면 형벌은 특히 준열하다. 형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 문명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다. 여전히 형벌의 준열을 답습하여 고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체면에도 관련된다. 오늘날 외국인이나 일본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편협한 인민이고, 야만의 풍속을 전혀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곧 이러한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를 든다면 태형과 같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선의 구(舊)형법에는 곤장이라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태형은 괴이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 대국의 대열에 들어간 우리 일본의 판도 내에 이러한 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신속히 이를 개정하여 문명적 형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조선인을 단속하는 데 적당하지 않다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해괴한 말이다. 일본에서도 신율강령에서 현행 형벌에 이르기까지 개정할 때마다 같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려한 사실이 과연 지금 존재하는가. 조선 형법을 개정하는 데 우려할 바가 아니다.

13. 조선에서는 기독교가 의외로 만연하고 앞으로도 더욱 만연할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와 교도가 일본에 걸핏하면 반항하는 것은 누누이 관변(官邊)을 통해 들은 바이다. 다소의 사실은 그렇다지만 이는 그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점은 이토 공이 통감

이었던 시대에 가장 노력했지만, 데라우치(寺内) 총독 시대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들과 거의 교류가 없다. 그들은 총독부가 기독교를 압박한다고 말하고, 총독부 측은 기독교도가 우리에게 반항한다고 말한다. 이는 물론 서로 간의 오해에서 생긴 일이다. 기독교 목사와 교도를 일률적으로 말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선교사와 교도는 이번 소요에 추호도 관계없다. 또 같은 교도라도 조합교회(組合敎會)와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소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모두가 어떤 원인이 있는지 강구해야 할 문제이다. 작년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견했을 때, 그는 조선의 감독인 하리스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하리스는 이토 통감의 처치(處置)를 칭찬했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미국의 조약을 깊이 살펴 파악한 것이겠지만, 나는 이 점에 관해 심히 유감이 많다.

14. 교육과 종교는 원래 혼동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과거 조선에 거주하던 선교사 등 4~5명과도 면회하고 이러한 취지를 언급한 적이 있다. 그들은 본국에서도 동일하게 교육과 종교의 혼동을 피하는 행정상의 처치에는 추호도 이의가 없지만 항상 기독교를 압박하는 처치가 있다고 몇몇 사실을 들어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은 물론 협소문에 근거한 것이다. 요컨대 오해는 종교와 교육의 구별을 정함으로써 초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의 소통 결여 혹은 그들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한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갑의 종교를 배척하고, 을의 종교를 후원하는 것은 행정상 유해무익한 일이고, 이러한 조치로부터 여러 분요(紛擾)가 일어난다. 그들에게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이 행정상 가장 필요한 일이다.

15. 조선의 특별회계는 당분간 현재 상태로 두어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작년 나는 홍카이도를 시찰하던 중 혹시 홍카이도에서 특별회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대만의 실례에서 보아도 그렇다. 대만의 발전은 필경 특별회계의 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조선의 개발을 위해서는 당분간 현행 특별회계 제도를 존치해야 하고, 이는 조선의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 단지 조선총독부의 이재자(理財者)가 조선의 재정이 독립했다고 말하며 그 공로를 과시하는 것은 정말로 가소로운 일이다. 지난번 지조(地租)를 더 징수했을 때 5개년을 시점으로 재정 독립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오늘 날 독립하여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정의 독립은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조선이 특별회계의 힘을 통해 얼마나 발달했는가의 문제야말로 문제 삼을 필요

가 있다. 요컨대 현행 특별회계는 당분간 존치시키고 더욱 그 힘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위에 열거한 것 이외에도 시설해야 할 것이 많고, 또 위에 열거한 것 중에는 현재 곧바로 실행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하지만 조만간 이를 실행하면 안팎의 비난을 피하면서 병합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출전 : 朝鮮統治私見—内治同化の立場より統治方針概述ぶ, 『齋藤實文書』 13, 61~93쪽〉

3. 사이토 마코토 총독, 조선 통치에 대하여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

○ 회고 1년

재작년 9월 조선에 부임한 이래 이제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취임당초 성명한 것처럼 시정방침의 요강인 치안의 유지·교육의 보급·지방자치의 진정(振貞)·산업과 교통의 개발·위생의 개선 등에 대해서는 착착 실행하고 노력하는 중이다. 물론 이들 시설 중에는 성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올리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나는 대체로 각각의 시설을 통해 반도의 개발과 민생의 번영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그런데 실행하고 아직 달성되지 않았지만 세월은 덧없이 빨라 1920년을 보내고 새로운 1921년의 봄을 맞이해서 흥중에 다소의 감개가 있다.

○ 내외가 다사(多事)했던 시기

회고해보면 과거 1년은 매우 내외가 다사했던 시기였다. 밖에서는 과거 5년에 걸친 대 전란이 겨우 종식되었지만, 또 세계가 새로운 국가 경영에 부심하고, 이르는 곳마다 격렬한 경제적 전란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유럽 전란의 결과 동요하는 세계의 사상계는 여전히 아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나라가 노동쟁의 등의 해결에 고심했다. 특히 평화극복 아래 동양방면은 정치상, 경제상 또 군사상으로 크게 세계열강의

이목을 끌고, 종종 한심(寒心)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밝은 천자가 위에 계셔서 밝은 덕을 펼쳐주시고, 신자(臣子) 6천만이 정성을 다해서 황모(皇謨)를 보좌해 드리고 있으므로 이 세계적 난국의 상황에서 도리어 국광(國光)을 사해에 발양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우리 나라의 경사이고, 우리 동포와 함께 축배를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안으로는 세계적 불안의 여파를 입어서 우리 조선 내부의 민심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령선인 등이 내외와 호응하여 불온한 행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폭탄을 던지거나 혹은 암살을 행하거나 각종의 폭행·협박을 도모하거나 또는 언론·출판·집회 등에 불온사상을 선전하는 등 반드시 형세를 낙관할 수 없다. 이러한 행동은 양민(良民)의 독이 될 뿐 아니라 실로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일선 병합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제압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다행히 작년 아래 고심한 경찰력의 충실은 올해 들어 더욱 완성되고 더구나 모두 열심히 분투하며 쉬지 않고 활동하였다. 관민 역시 일치, 협력하여 임했기 때문에 점차 반도의 치안을 회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는 불령선인에 대해서도 각각 적당한 조치를 취해 해를 막고 뿌리를 고사시키는 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다른 면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민의 창달의 길을 강구하고, 교육제도의 개정을 시행하여 교화의 보급에 한 획을 그었다. 더욱이 위생 설비의 개선을 촉진하고, 또 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혹은 산미 증식의 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산업의 시험과 장려를 시도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민중의 복리 증진을 기획했기 때문에 1920년도에 약 2천 4백만 엔, 철도 정비로 약 520만 엔의 경비의 증가를 보기에 이르렀다. 더하여 조선인과 일본인 차별 대우 폐지와 동시에 조선인 소장(小壯) 중에 능력 있는 자를 발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군수·학교장 등으로 발탁한 자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관계를 개정해서 총독부에 조선인 사무관 5명, 도에 각 이사관 13명을 신설, 임명해서 조선인 임용의 길을 열어 일반 조선인의 발분, 노력을 촉진하고 있다.

○ 훌륭한 2대 은전

특히 작년을 추억하는 데 있어서, 우리 2천만 동포와 함께 황공하고 또 크게 감사해 마지않는 것은 이왕세자(李王世子) 전하와 나시모토의 미야 마사코(梨本宮方子) 여왕 전하와의 혼인이 행해진 것과 함께 은사의 대전이 실시된 것이다. 이왕세자 전하와 미야 마사코 여왕 전하의 결혼은 말할 것도 없이 내선일가의 친화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 융화는 실로 더 한층 긴밀해지겠지만, 우리 황실이 내선융화를 위해 인덕을 드리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두 전하의 결혼과 함께 이루어진 은사를 통해 일반 감형을 받은 자 3,500여 명에 달하고, 특사 및 특별감형 등을 입은 자도 다수에 이른다. 김윤식(金允植) · 이용직(李容植)과 같은 소요사건의 원흉조차 이 은전을 입었다. 성은이 광대하고 끝이 없어 그 누구라도 감읍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 본 연도의 계획

해가 새롭게 바뀌어도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즉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아들여 세계의 대세와 조선의 정세를 고려하여 2천만 신동포의 황화(皇化)를 보급하여 삼천리 강산에 평화의 낙토(樂土)를 건설하는 것이다. 성심성의 껏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민중의 강복을 증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치안을 유지하고, 교육을 보급하고, 지방자치를 진흥하고, 산업 · 교통을 개발하고, 위생을 개선하는 것은 반도의 개발과 민생의 번영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전력을 경주해서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육제도의 확립은 백 년의 장계(長計)이므로 이전의 교육령을 개정해서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의 수학연한을 연장했지만, 이번에 더욱이 교육조사회를 설치하여 매달 회의를 열어 교육상 개선해야 할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야 한다. 이 밖에 지방제도 · 산업 · 교통 · 위생 등 각 방면에 대해서도 상당한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지금 시험 삼아 1921년도 예산에서 이미 결정한 시설의 수행을 기약함과 동시에 새로 계획된 경비의 대체적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경찰에 관한 것	84만 엔
교육	106만 엔
지방제도	52만 엔
권업	127만 엔
위생	22만 엔
우편전신전화비	158만 엔
철도 건설 및 개량비	650만 엔
세문(稅聞) 공사비	25만 엔

○ 무한한 친애와 동정

다만 내가 종래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통치방침이 어쨌든 일반 민중에게 철저하지 않아 여러 오해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당국에서도 여러 방법을 강구해 왔지만 이번에 더욱이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더욱 철저히 노력할 생각이다. 즉 지방의 관공리 교원 등도 그 취지를 체득하여 함께 분발해 주기를 바람과 동시에 더욱이 지방의 관공리 교원 등의 제사(諸土)가 국민을 지도하는 중책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서 온몸으로 백성을 이끄는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 특히 신동포인 조선인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을 토로하여 무한의 친밀과 동정으로서 조선인에게 임하고, 허망하게 일의 성공을 올리려는 것 없이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의지를 진작하여 50년 혹은 100년의 장래에 대성을 기하여 역왕매진(力往走邁進)하고 싶다.

○ 관민 일반에게 바람

조선 통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단지 일부 관헌의 힘에만 의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국민 일반의 양해를 얻어 협력 일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大同)으로 동종(同種)의 관계를 기초로 진실한 성의를 보여서 서로 융화하지 않으면 도저히 완전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작년 가을 실시된 협의회원 선거 때에 조선인 중 혹은 일본인을 선거하거나 또는 일본인 중 조선인을 위해 친절히 고려한 일이 있다. 또 천장절(天長節) 축하 때에 조선인 모두는 국기를 게양하여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작년 봄 조선 군수 30여 명이 일본의 정세 시찰 때에 각지에서 환영을 받고, 10월에는 조선 여교원이 단체로 일본의 교육을 시찰했을 때도 역시 각지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아 진심으로 일본인의 호의에 감사하였다. 작년 가을 11월 중추원 참의 일행이 일본을 시찰했을 때에도 일본인은 성의를 다해 일행을 환대하고 무엇이든 만족의 뜻을 표하고 조선에 돌아왔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내선융화의 실례로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앞으로 더 한층 내선 융화의 결실을 올리기 위해 각종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일례를 들면 일본의 종교인·교육자가 앞장서서 조선인 지도의 임무를 맡을 것, 또 일본의 자본가가 내선인과 함께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 혹은 조선과 일본의 청년·아동이 융합할 기회를 만들거나 혹은 상호의 가정을 개방하는 것과 같은 것은 바람직한 일로 조만간 실행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면 진실로 내선융화의 결실을 올리는 데 첨경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이 일시동인의 성지도 2천만의 신동포에게 철

저하고, 이왕세자 전하와 방자 여왕 전하와의 성혼의 취지도 유감없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믿는다. 나는 관민이라든가 조선인, 일본인을 불문하고 함께 노력하고 서로 지정(至情)을 발휘하고 융화하여 조선 통치에 이바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전 : 朝鮮統治二就元(1921), 『齋藤實文書』 1, 419~430쪽〉

4. 종래의 방침을 답습, 야마나시(山梨) 총독의 성명

야마나시 총독은 예정대로 부산에 상륙하자 아래와 같은 의미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부산 전(電))

조선 통치에 대해서는 전연 백지이다. 그러나 사이토 전(前) 총독의 의도를 답습하여 시세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도쿄를 출발할 때 다나카(田中) 수상으로부터 조선 통치 방침에 대해 여러 가지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에 부응하려 한다. 그리고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시대의 진운(進運)에 적응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한 후 결정하려 한다고 운운(云云).

〈출전 : 從來의 方針을 踏襲, 山梨總督의 성명, 『東亞日報』, 1927년 12월 20일〉

5. 야마나시 총독의 성명에 대하여(사설)

1.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씨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는 도중 제일착(第一着) 조선 지점인 부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나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을 발견하였다.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시대의 진운(進運)에

적응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한 후 결정하려고 생각한다.”는 끝 구절이 있다. 신임총독은 그 의사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이것을 당례(當例)로 볼 수도 있지만 신임 총독이 “시대의 진운에 적응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운운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정치가들의 항상 다반사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소간 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2.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친 속단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대의 진운에 적응”이라는 내용 의의와 그 실행 여하가 아마 야마나시 씨의 조선총독으로서 가치를 정하는 것이 될까 생각한다. “시대의 진운에 적응”이라는 것은 말로는 한 가지로 표시되는 바이지마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로, 또는 여러 층으로 구별되는 바이니 신임한 야마나시 총독의 견해가 어느 것이며, 어느 층에 속할 것인지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 나는 야마나시 총독을 보고 새삼스럽게 할 말이 아닌 줄을 알지만 되풀이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바가 있으니 그것은 현대에 있어서 조선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취급하게 되면 그것은 조선 민족의 사활문제일 뿐 아니라 일본 민족의 사활문제에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3.

시대의 진운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각인각색으로 다른 것과 같이 오늘의 조선을 보는 자 또한 각인각색인 것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조선을 일본의 처지에서 보아도 금일의 상태는 크게 우려할만하다는 점만은 대개 일치한 것인 줄 믿는다. 이 우려할 바를 무시하는 자는 사리(私利)를 위하는 자이거나 또는 어떤 의미에서 조선에 대한 맹목자(盲目者)라고 할 수 있으니 그는 가히 더불어 논의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려할 바라고 하는 인사(人士) 중에도 조선에 대하여는 각양각색의 견해와 의사(意思)를 가진 줄 믿는다. 참으로 금일의 조선은 어제의 조선이 아니다. 충분히 세계의 진운에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 민족적 진취성을 억지로 고압(高壓)하면 무용한 파도를 일으키는 형세를 짓고야 말 터이니, 이것을 증명하는 사실은 과거 수십 년과 목하 현재에도 그 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열거할 필요도 없다. 다시 나는 야마나시 총독에게 조선 현실을 여실히 보기로 바란다. 시대의 진운을 정확히 간취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조선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조선인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현실이 계속 누적되면 그 결과가 조선 민족의 성쇠(盛衰)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민족의 장래에도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출전 : 山梨總督의 聲明에 대하여(사설), 『東亞日報』, 1927년 12월 21일〉

6. 야마나시 총독,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청 직원에 훈시

불초(不肖) 뜻하지 않게 조선총독의 대명을 받들고 이에 임무에 임해 오늘 친애하는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지 지성으로 공(公)을 받들고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주야 노력해서 일반 사람들의 의탁을 지지 않을 것을 기약할 따름입니다.

조선의 통치는 오로지 일한병합의 광모(宏謀)를 본받아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의 정신을 근거로 시세의 진운에 따라 마땅히 그 완급을 조절하여 시설 경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본부 설치 후 이미 18년이 되었고 시설 제반의 성적이 현저한 것은 일반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필경 여러분이 끊임없이 선임자를 보좌하여 노력한 결과물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통치는 실로 국가의 장계(長計)이고 과거의 수많은 효과적인 치적도 통치의 대국에서 본다면 백년의 여정에 한결음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금후 이미 정한 계획의 완성과 각종 시설의 개선, 충실에 노력함은 물론, 날마다 나아가고 새로워지는 국시(國是)에 근거해서 시운에 순응하는 기획을 계을리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지금부터 한층 분투하여 통치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시세의 진운에 따라서 관공서의 사무 또한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그 처리는 한층 민활(敏活)이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은 사무의 간소를 도모하여 능률을 올리며 더욱이 안으로는 제반 사무를 긴밀히 연결하고, 밖으로는 민중의 이익과 편의를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기강확립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관공리(官公吏)는 공명정대한 태도를 갖고 당동벌이(黨同伐異)를 경계하며 근엄 정숙하여 진실로 그 폐단 없이 일반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조선의 실정을 살피지 못했으므로 이상은 생각하는 바의 일단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후로 서서히 제반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회를 보아 통치에 관한 소견을 서술하여 여러분의 유의를 청하고 싶습니다.

1927년 12월 20일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12월 21일〉

7.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 각 도지사에 훈시

훈시 요지

도지사

불초(不肖) 전일 조선총독의 중임을 맡아,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참집(參集)을 요구하여 회의를 여는 것에 임해, 조금이나마 소견의 대요를 서술할 수 있는 것을 실로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조선 통치의 길이 동양의 평화와 대중의 강복(康福)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일찍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 이러한 방침하에 여러 제도의 정비와 산업의 개발에 노력하고, 치안의 유지와 복리의 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것은 내외가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관여한 여러분의 노고가 많고 또한 함께 경축해야 할 바입니다.

현재 사방의 정세를 살피건대 세계 각국은 거의 동일하게 재계의 불황이 극도에 달하고, 사상의 혼란은 자칫하면 귀의할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지 애태우며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의 기초를 확립하는 도정에 있고, 문화의 향상이 여전히 확산되지 않은 신흥의 이 땅에서는 그 영향이 특히 심각하여 지금은 비상한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에 임하는 자는 대중과 함께 우선 이 정세에 비추어 실정을 연구하고 사실에 근거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여러 시설에 주도면밀한 준비와 확고한 결의로 매진해야 합니다.

사상의 통합, 정조(情操)의 융화를 도모하는 것이 통치의 첫째 의의(第一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의심을 높이고 성실하고 속이지 않는 좋은 풍속을 배양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호 이해와 공애(共愛)를 철저히 도모하여 진실로 국가의 존립과 서로 용납되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중정(中正)이 부족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여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사상의 동요, 감정의 조격(阻隔) 방지·교정에 관해서는 사회의 일반 자각을 촉구함과 동시에 문화 시설을 통해 선도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사람으로서의 장래와 국민으로서의 신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신생활의 안정을 기약함과 동시에 물질생활에도 불안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도는 한마디로 한다면 근검의 미풍을 발양(發揚)하는 데 있습니다. 가업에 친근하고 근로를 즐기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요체이고, 낭비를 줄이고 절약을 중시하는 것은 치산의 요체입니다. 미간지(未墾地)의 개척, 신자원의 개발, 신사업의 시설에 의해 국부의 증진을 도모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일반 대중이 기꺼이 이를 받아들여 근검 노력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생활의 안정도 일가의 흥륭(興隆)도 결국 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근로생활과 절제미덕의 권장에 마음을 쓰기 바랍니다. 다수 농민의 생활 기본의 확립에 관해서는 자작농의 창정(創定), 소작제도의 개선, 부업의 조장(助長)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조금씩 이의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식산농업은 종래 각각의 시설에 노력해서 차차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 주로 원시산업의 완성이 대부분입니다. 자원의 함양과 개발에 힘을 쏟아 생활필수 품의 자급계획을 촉진하고, 더욱이 국제시장의 상태에 대응하여 그 지방 특유의 산업 발달을 조성하고, 상공 조직의 완비를 통해 무역을 진흥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 실시한 빈민구제사업에 대해서도 치수, 치산과 같이 지방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 도로나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의 완비를 도모하는 등 산업의 기본을 배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과거의 성적에 비추어 장래의 계획을 각각 조사 중이지만 산업상의 시설에서 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먼 장래에 속합니다. 당면한 실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적지 않으므로 때때로 원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릇된 견해로 인해 사업을 중도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축적하고 이해(理解)하여, 특히 지금과 같은 재계 불황의 시기에는 한층 계획을 엄밀히 하여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진실로 실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 경제의 현상에 비추어 그 기초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통해 행정, 재정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당한 세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정리는 조직과 집무방법을 합리화, 단순화하여 사무의 간소화 정비(政費)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또 세제의 개정은 부담의 적정과 민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어 조세제도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재정의 정리는 행정정리를 통한 정비의 절약과 동시에 시세에 순응하여 제반 시설의 완급과 경증을 깊이 연구해서 잘 안배하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행정, 재정 및 세제의 정리개선은 지금 서둘러 조사 중이지만, 지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절감하고 그 실행에 유감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방제도는 작년 겨울 전반적으로 크게 개정했고, 도제(道制)를 제외한 부읍(府邑)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각 제1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다행히도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각컨대 자치제도 성적의 여하는 제도의 정비보다도 오히려 운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부읍에서의 자치제도 운용과 그 성적은 민중의 정치의식의 시련(試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개정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므로 관민 협력해서 잘 운용하고, 지방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소기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안의 유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주도면밀하게 주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과거에 수차례 불온한 소요를 야기했고, 가까이는 지난달 초순 각지에서 재류 중화민국 인에 대해 심상치 않은 사건이 돌발한 것은 유감입니다. 국경의内外를 불문하고 그 어떠한 국민도 그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치안의 보지(保持)에는 인습에 구애받지 말고 정실에 의하지 않으며 엄격히 잘못된 것을 고쳐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부하를 독려 지도하고, 경비(警備)의 직책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경계를 엄밀히 해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전력을 쏟기 바라며, 더구나 일이 발생하면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억제하고 또한 장차 사후에 선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행동 및 조치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직권을 행사해서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요컨대 통치의 요체는 특히 현재 실정에서 생각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장차 또한 그 수행에 임해서는 구습에 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신한 창의와 특수한 궁리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국민총화의 힘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민의를 창달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선두에 서야 할 관공리는 모름지기 정치의 운용자임과 동시에 사회민중 심지(心地)의 개척자로서 임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대중에게 사양하고 영합하여 추수(追隨)하는 것이 없도록 단호한 신념과 확고한 기개로써 민중에게 나아가야 할 곳을 제시하고 시련을 이겨내고 인도하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땅에는 오늘 여전히 깊은 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층 부하를 독려하고 관의 기강을 진숙(振肅)하여 정사에 힘써야 합니다. 조선과 일본의 융화, 민풍의 작흥(作興), 산업의 발전, 기타 정무의 개선에 노력하여 정도의 쇄신과 지방의 개발을 도모하고, 민복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통치에 대한 소회는 취임 후 누차 발표한 유고, 성명, 훈시 등을 통해 이미 납득하였으리라 생각하므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그치고, 총감 이하 각 주임의 국부장으로 하여금 지시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보고를 들으며 다시 기회를 만들어 간담을 거듭하고자 합니다.

1931년 8월 6일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8월 8일〉

8.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농촌진흥운동에 대한 훈시

전 조선 농산어촌 진흥 관계 관(官) 대회동

농산어촌진흥운동 지도진의 제일선에 선 관계자 대회동 제2회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경성부(京城府) 죽첨정(竹添町) 금용조합 연합회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전 조선(全朝鮮)의 군수(郡守), 도사(島司) 약 220명, 그리고 각 도의 지방·학무(學務)·산업·이재(理財)·산림·수산·경무(警務)·기수(技手)·농촌진흥담당자·금융조합지부간사 약 350명, 본부 관계관을 합쳐 600여 명이 모인 대회동이었다.

우시지마(牛島) 내무국장 통재(統裁) 아래 첫째 날은 오전 8시 개회, 먼저(劈頭) 전원 기립하여 국가를 제창한 후, 우가키 총독은 국민정신 작흥(作興)에 관한 칙서를 봉독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힘 있는 훈시(訓示)를 약 한 시간에 걸쳐 알기 쉽게 천천히 강술(演述)하여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켰으며, 10분간 휴식 후, 본부 촉탁(囑託) 야마자키 노부요시(山崎延吉) 옹은 ‘제가의 요도(齊家の要道)’라는 제목으로 농촌진흥운동의 기초 개념을 강술(講述)하고, 몇 차례 휴식하니, 오후 4시가 되었다.

둘째 날에는 야마자키 옹의 강연이 이어지고, 경성에 와 있던 전 주미 대사 데부치 가

쓰지(出淵勝次) 씨, 전 법제국(法制局) 장관 야마카와 다다오(山川端夫) 양 씨의 시국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셋째 날에는 본부 야히로(八尋) 촉탁의 강연, 이마이다(今井田) 총감(總監)의 훈시가 있었고, 오후 간담회로 옮겨 참석한 유지(參會有志)로부터 유익한 의견 발표가 있었고,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되어 대단한 정신적 효과를 거두고 폐회되었다. 그리고 경성방송국에서는 이 갱생약진(更生躍進)의 조선에 고동치는 심장의 기동을 대중에게 전하여 주간에는 강연, 약간에는 6개 군수의 조선어 방송을 했다.

우가키 총독 훈시

1. 회동 개최의 취지와 과거의 노력에 대한 감사
2.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지위
3. 제국 내에서 조선의 진가
4. 농본사상과 진흥사업의 철저
5. 농촌 진흥의 회고(回顧)와 장래의 전망
6. 진흥사업의 지도와 통제 요령
7. 사상의 순화(醇化)와 심전(心田) 개발
8. 결언

1. 회동 개최의 취지와 과거의 노력에 대한 감사

여기에서 전 조선 농촌진흥 관계자의 회동을 개최하여 여러분의 응장한 모습을 접하고 약간의 소견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것을 저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뒤돌아보건대 1932년 5월 농산어촌(이하 농촌이라고 표현함)의 진흥, 자력갱생 운동을 제창한 이래 벌써 3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만, 전회 여러분의 회동은 사업 창시기였습니다. 오로지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알고 기운의 작통에 경주하여 말하자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적인 일의 실태를 말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야 식자들의 커다란 협력과 지원 그리고 지도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체험과 노력을 쌓아 이 해당 사업은 오늘날에는 일대 약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학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그 취지를 알아듣고 갱생계획서를 제시하면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이조차도 일가(一家) 생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노약자와 어린이, 부녀자까지 근로에 참여하고 자신 집의 갱생에 정진하는 미풍을 익히게 된 것은 취임 이래 내가 희망하고

동경해 마지않았던 농촌의 진정한 모습이며 통치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만, 오늘 현실에 그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장래를 달관하기 위한 제1보를 내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훌륭하게 완성되느냐의 여부는 오늘날 남겨진 과제입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지금 까지보다 한층 더 많은 곤란과 이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위의 금후의 노력은 실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조선 반도 간생의 대업을 성취하고 국가가 당면한 난국을 타개하여 일한합방의 성스러움을 받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약진하여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조선 반도에 봉사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여러분 각위의 회동을 요구하고 대사업의 완성을 향해 관계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서로 도와 쓰러지는 것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여 맹진할 것이라는 저의 염원을 피력하고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사업이 개시된 이래 조선 반도의 산야에 흘러넘치는 진홍의 기운, 운동의 진전은 모두 통치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대한 경관입니다. 이는 관(官)과 민(民)이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여 지도자는 그 분야에서 소속을 초월하여 이 사업 아래서 협력하고 모두 노력하여 건투한 것이 오늘날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각위의 이 과정의 중추로서 장관을 보좌하고 혹은 지도 제1선에서 중요한 자리에 서서 상사의 의도를 준수하고 시종일관 깊증내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조선 반도 농촌의 궁핍에 깊은 이해심과 동정을 가지고 이것이 국가를 구한다고 생각하고 정진해주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날의 고투(苦鬪)를 회상하며 나아가 앞날의 노력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게 되어 감격이 한층 더 해집니다. 여기에 회동 시작에 여러분께 또한 여러분 각위를 통해 많은 지도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장래에 많이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2.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지위

세계 각국의 정세를 살펴보면, 이전 회동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난국을 타개하고 국력의 회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만,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에 있어서도 오늘날은 아직도 불안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초조해하고 번민하며, 게다가 암흑 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국 자체의 모습을 보면 역시 세계불안의 파란에 휩싸여 동요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아 국제연맹의 탈퇴와 조약의 폐기 등 단호한 결의와 주도면밀한 준비 아래 마지막으로 올 때까지 왔는데, 다시 말하면 궁지에 몰렸지만 광명의 빛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선린 만주국의 기초는 나날이 구축되고 있고, 만주와 러시아 간의 북쪽 철도 교섭은 성립되었고, 오랫동안 긴장관계였던 중국과의 관계도 점차 호전되고 있는 등 국가의 행보가 다사다난하지만 주위의 여러 나라에 비하면 혜택을 받은 많은 조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나라 각각이 현재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상, 경제 방면에서도 일본 제국 특유의 정화(精華)는 점차적으로 그 광채를 내고 또한 다년에 걸쳐 축적한 실력을 요즘 눈에 띌 만큼 진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 일본 제국의 상황은 현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현저한 자각에 의해 사상은 점차로 온전·중정(中正) 궤도로 돌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국민들의 분투에 힘입어 난관을 타개하고 호전의 기운을 걷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일본은 타국에 비해 서 모든 점에서 조금 우월하며 행복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이러한 발흥의 기세를 가지고 신진(新進) 기예와 천부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연은 타국의 질투를 받는데 잘못 디디면 화근이 있어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러한 사태도 예기하고 거국적 결의를 가지고 이를 능가하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년 이래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경주하여 온 조선 개생 운동은 이러한 국가적 결의와 준비를 구체화하는 신성한 작업의 하나라는 것을 절실히 뇌리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3. 제국 내에서 조선의 진가(眞價)

조선이 제국으로서 국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공헌을 하고, 또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해 보니, 지금은 전반적으로 포만상태에 있는 일본에 비하면 조선은 경제적으로는 처녀지이며 또한 심전개발의 미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농업은 원시적인 것에 가까워 조잡한 영역을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집약적이고 다각적인 경영에 의한 수량의 증가, 품종의 개선 등 많은 부분이 남아있고, 또한 잉여노동력의 이용, 소화에 의한 부업 진출도 매우 용이합니다. 즉 농산어촌에서 제반 업종이 개발과 증식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면양(緬羊)의 사육과 면 농사와 특수한 광업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자랑할 만한 정도의 천혜를 입고 있으며, 경제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

지방을 비롯해 가까운 만주에도 광활한 미간척 농경지가 있고, 게다가 지리적, 문화적으로도 풍요롭게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상공업은 장래에 발전할 영역이 아니라고 하여 아직 요람의 시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기업이 소질과 내외 수급 관계에서 보아 그 장래에는 가능성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아 일본의 그 것과 비교하여 보면 훨씬 전도가 유망하며 또한 발달할 여지가 많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문화가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의 정서는 일반적으로 소박하고 순종적이며 정신적으로도 순화하기 쉬우며, 심적으로도 장래에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기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민중에게는 자각과 자숙의 마음이 생기고 있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조선의 정신적 향상과 물질적 발전은 실로 팔목할 만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물심양면의 간생의 느림과 빠름은 제국 국운의 전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현재에 당면한 난관 타개와 지대한 관련을 가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조선의 장래는 일본의 전도에 크게 기여하고 공헌할 입장에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4. 농본사상과 진흥사업의 철저

요즘 조선 내에 각종 공업 발흥의 기운이 보이고, 일부 식자들은 조선의 농업에서도 정체가 나타나 점차로 공업본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을 보면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농업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고 구태의연한 영농법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농업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민중도 농업의 본의를 이야기하며 농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다각적 농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곡물 이외에 양잠, 축산 및 면 농사, 아마(亞麻), 사탕무(첨채(甜菜))의 재배 등도 발달했고 조합도 운영되어 농본주의가 경제주의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지면적의 인구 비율을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유리한 것도 그렇다고 과다한 것도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민중은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구는 공업이나 상업으로 전환하여 그 쪽에 진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에서의 다원적, 다각적인 산업의 발달은 그 나라 또는 그 지방의 견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중점을 두는 확실한 중심 존재가 긴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입각해서

많은 조치를 취하고 시설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떠한 소문에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모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적 취지를 체득하여 오로지 농본사상 시행과 진흥사업에 매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반도를 간행시켜 순박한 국민성을 유지시키고, 조선 민중의 강령을 영구히 확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느 나라는 과거에는 산업 본위의 국가였지만 자본주의의 발달, 기계기술의 진보에 의해 점차로 공업본위의 나라로 변모하여 세계의 여러 미개국가, 후진국가에 진출하여 크게 부를 축적, 증식하여 1세기 이상을 통해 전 세계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서 그 나라의 거래처인 미개 지역의 나라들이 산업적으로 진보하고 자급자족의 지위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으로 성장하여 세계무대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공업 입국의 근본에 균열과 파탄이 생겨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살아있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 농촌진흥의 희고와 장래의 전망

지금 이 사업은 실시 이후 3년의 세월을 거쳐 지도자와 농가가 함께 수련을 쌓았습니다. 말하자면 서로 고통을 분담하여 가속도가 붙고 효과적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되었으며 특히 사업 중핵을 이루는 농가 간생계획의 실행이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1933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생의 첫 성과로서 만족할 만한 것은 농가 지도자가 함께 이를 체험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고, 나아가 지도자들이 이로써 농가의 사정을 폭넓고 깊게 인식하게 된 점으로 이후에 간생 사업의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의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따뜻한 지도의 손길에 의해 빙궁을 탈피하고 점차로 생활의 안정을 얻어 앞으로 일보 전진하여 생활 향상 과정을 겪고 개인적으로도 완성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사업을 더 촉진시키고 강화시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시설을 창시, 확충하고, 중견인물의 양성 등 모든 유효한 방책을 취할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이 사업을 통해 민중의 자치와 자율의 능력에 맡길 수 있는 협동체 조직을 정비하여 그 활동을 촉진하고, 개인의 성숙과 맞물려 단체의 자치적 성숙을 쌓아 개인으로서나 자치체로서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이 없도록 하여 조선통치의 이상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통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1기 기초 공작으로서 올해 초두에는 우선 농민 대중

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1935년 이후 10개년 기일로 하여 전면적인 간생부락 확충 방침을 정한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명실상부하게 이 사업의 보편성과 항구성이 확립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 진흥사업의 지도와 통제 요령

진흥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현실과 행정조직의 계통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군(郡), 도(島) 당국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어 자연스럽게 군수(郡守), 도사(島司) 등은 지도자의 제일선에서 총수로서 중요한 책무를 담당합니다.

이를 내부적으로 보면 청사 내 다수의 산업기술원을 먼저 통제하여 각각 분담한 기능을 동일 목적을 향해 종합, 집중시켜 능률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제일보입니다. 나아가 외부적으로는 군(郡)·도(島), 읍(邑)·면(面)의 농촌진흥위원회를 활용하여 모든 지도 관계자 상호 간의 연락관계의 통제를 통해 조금의 간극도 없이 조금의 쓸데없는 일도 생기지 않도록 지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행동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주도 면밀한 지혜와 성숙되고 성실한 노력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이 민정(民情)을 정찰하고 사심을 버리고 민중의 순정이 불타 소기의 목적을 향해 일치협력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손가락이 힘을 합치면 주먹이 된다는 옛 사람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모든 공사(公私) 지도 관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동일한 목적을 향해 협동 노력하는 모습은 진정한 조선의 독특한 모습이며 커다란 자랑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움을 점점 더 고양시키고 그 모습을 정리하여 영구한 것으로 만들어갈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제부터 기존의 이러한 방침에 바탕을 두고 간생부락의 전면적인 확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종전에 비해 부락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한정된 지도 관계자만으로는 도저히 만전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를 농민 자체의 활동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계도(啓導)하거나 조장(助長)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아이 양육에 견주어 이야기한다면, 아이가 기어 다니다가 일어서고 일어서면 걷게 되듯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마음을 쓰면서 지도하고 독려하여 하루 빨리 자치자율의 민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부락을 등에

업고 건투하는 중견인물의 양성이나 부인들의 내조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상의 순화와 심전 개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갖 종류의 모임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 왔지만 농촌갱생사업에 대한 저의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질상의 안전을 꾀함과 동시에 특히나 정신상의 진정, 향상에 힘쓰는 일이 절실히 필요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민중에게 건전한 신앙심을 환기시키고 그것을 배양하도록 하여 무미건조에 빠지거나 황폐해질 수 있는 민중의 심전에 윤택함을 보태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종에 종사하고 생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말하자면 물심양면에 안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진흥사업 개시 이래 그 움직임을 관망해 보니 종래에 쉽게 개혁하지 못했던 몇 가지 폐습들이 나날이 교정되고 일반 사상도 이러한 추세에 있어 점차 순화되어 가고 있어, 지금 이 사업은 영세농가의 갱생뿐만 아니라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락 내부의 유산자나 유식자 계급들도 널리 그 권내에 포용하여 결국 반도의 사상계의 동향도 지배하게 되는 정세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기를 놓치지 말고 경제갱생과 병행하여 아니면 그것보다 선행하여 심전 계발을 통해 일신을 꾀하고 이를 진흥사업 내에 조직화하여 융화시킨다면, 사회연대 사상이나 빈부, 지혜 등 미풍양속과 함께 자라나 조선 반도 낙원화의 길은 점점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동양의 문화와 도의는 유교와 불교에 유래를 많이 둡니다만,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불행하게도 조선 반도는 그 형태와 정신을 많이 유지하지 못하여 시세의 추이와 교섭을 결여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원래 인간의 생활에는 형식상의 권위를 갈망하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생활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고, 이상도 행복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본연의 마음에 맞추어 신앙적 교화의 길을 농촌진흥사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은 아마 불상을 만들고 혼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점임을 이해하고 이 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에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8. 결언

말하자면 정치는 본래 도덕을 가지고 일관해야 하는 것으로 힘은 그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인(官人)이 민간인을 볼 때 마치 상처 난 곳을 보듯이 안타까워하고 감싸준다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인정을 가지고 임하면 민중은 기대하지 않던 보살핌에 친근함을 느끼고 이에 감복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치국안민(治國安民)이 실현됩니다. 농촌진흥 사업에서 갱생계획의 지도는 농민 한 집 한 집에 대해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 순정한 마음으로 출발하여 하나하나를 그들에게 납득시켜 지도해갈 때 대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법칙의 구속이 없을 뿐더러 관습의 구애도 없고 운동의 신천지, 일의 처녀지이므로 창작하고 자유자재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단 신념과 성의와 양식이 있으면 지도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지는 없으며, 또한 이보다 영구한 생명을 가진 일은 없으므로 경륜을 행하려는 자는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몰아의 정신에 입각하여 희생봉공(犧牲奉公), 분골쇄신(粉骨碎身), 신고경영(辛苦經營)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마음먹고, 형식이나 표면상의 가식에 빠지지 않아 꽃도 열매도 후인들에게 양보한다는 아량으로 시종일관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야말로 진정한 갱생의 길로 정화하는 것으로 농가도 분기하고 자가의 갱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조선 반도 갱생의 환희는 지도자들의 영구불멸의 공적이 될 것이며, 저도 훗날 기쁨을 만민중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절실함을 이해해주시고 한층 더 건강에 유의하시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출전 : 全鮮農山漁村振興關係官大會同, 『朝鮮』 32권 5호, 1935년 5월호〉

9.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시정 25주년 기념 훈시

시정 25주년에 임하여

우가키 총독 담(談)

1910년의 총독정치 창시의 해부터 혜아려서 올해는 마침 25주년에 해당하므로 오늘 총독부에서 기념식전을 거행하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의의 있고 영원히 진행할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단지 25년이 1세기의 4분의 1이고 인생 50의 반에 해당한다는 숫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통치 대국의 과거, 현재, 장래를 내다보고 그 안에 내재된 염숙한 역사성을 통찰하여 여기에 한 시기를 구분 짓는 것에 적지 않은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황송하게도 일찍이 조선 통치에 대해서 진념(軫念)하신 성상 폐하께서 특히 이 획기적인 기회에 시종(侍從)을 파견하시어, 반도의 산업, 문화 및 일반 민정 등을 시찰하게 하신 것은 무한한 광영임과 동시에 감격을 한층 더 새롭게 할 따름이다.

우리는 지금 쇼와(昭和) 시대를 맞이하여 원대한 황모(皇謨)가 성취하는 바를 찬양하지만, 일한병합이 메이지(明治) 시대의 일본 및 동아시아의 시국에 있어서 얼마나 장엄한 역사적인 사건이며, 더구나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를 회고할 때 실로 감개무량하다. 일청 · 일러 양 전역에 국운을 걸고 궐기한 주원인도 여기에 있고, 일대의 명신 이토(伊藤) 공을 잊은 것 또한 이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한의 병합은 저 많은 나라들이 모국의 융성과 자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미개의 지역을 영유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가 다르다. 당시 우리 천황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가 내리신 조칙이 빛나는 것처럼 소위 동양의 평화화립과 양 국민의 통합에 의한 복지의 증진을 목표로 이루어진 신성한 하나의 큰 경륜의 발현이다. 드물게 황도를 위해서 패업을 배제하고 대응한 두 개의 대전쟁의 전과가 뜻밖에 상근일가(桑槿一家)의 신일본의 실력과 도의적 정신을 유감없이 세계에 발휘하여 국제무대에서 반석이 되는 사유가 되었다. 또 안으로는 내선융합이 해가 갈수록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제국 웅강의 일대 반석이 된 사실을 돌아보면 이 위대한 성업의 건설에 희생된 사람들의 영령 또한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양국 병합의 대정신은 같은 뿌리를 가진 두 민족의 공존과 공영 · 융합과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정 아래 시정의 대강은 일관해서 바뀌지 않았다. 대외적 사안

은 물론 대내적으로는 산업·교육·재정 등 무엇이든 항상 모국의 지지와 보살핌을 통해 원활히 발달하였다. 오로지 반도 동포의 복지를 일본 국민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분주히 여러 시설을 만들었다. 그 결과, 병합 당시 물심 모두 피폐, 황폐의 극에 있었던 반도 동포의 생활을 이끌어서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하고, 2천만 민중에게 자비로운 천황의 은혜를 미칠 수 있게 한 사실은 이제 친근하게 반도를 시찰한 구미의 식자들조차 인식의 과오를 정정하고 감탄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결코 통계나 수치 등을 척도로 삼는 물질 방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은 실로 일본인과 조선 간의 사상·감정의 융화와 국민의식의 귀일(歸一)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치의 성쇠를 생각하고 싶다.

뒤돌아보면 병합 이후 최근까지 커다란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뜬구름이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고가는 세계 풍조에 희롱당하는 단견(短見), 이단의 무리들이 자주 좋지 않은 것을 기획하여 치안을 문란케 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았다. 지금도 국경의内外에 걸쳐 불온한 사상을 품고 각종 책동을 계속하는 분자가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동포 전체의 사조나 정파의 주류에 영향을 미쳐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국가 이상의 정세에 당면하여 거의 내선일체 일심의 강한 의식이 발동하여 지금은 이 결합을 방해하고 협화(協和)를 해치는 모든 유해한 사상이나 감정을 배제·제거·박멸하려는 경향이 각종의 현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3년 전부터 획기적 흥국적인 성업(聖業)으로 일어난 농산어촌진흥운동, 자력갱생운동과 같은 것도 이러한 풍조와 경향을 기조로 이해되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단지 드물기는 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풍속 관습이 같지 않기 때문에 피를 나누는 경지에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유감이지만, 나아가 다음 4반세기에 이 두 민족은 더 크게 혼연한 동화, 융합의 단계에 도달하여 세계사적으로 당연히 하나의 경이를 이루게 될 것이다. 조선에서의 시정 방침과 안목은 대개 이 경지를 목표로 나아갈 것을 이번 기회에 단언한다. 더욱이 관민일치의 각별하고 깊은 이해와 강한 감명을 촉구하고 싶지만, 다행히 여러 시설의 정신을 점차 민중이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획기적인 기점에 서서 함께 희망에 넘치는 장래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존의 위엄과 많은 선배 제현의 고생스러운 경영의 덕이다. 특히 지금, 획을 긋는 시대의 기념식전을 거행함과 동시에 서거하신 분들의 영령을 제사하고, 남은 자에게 자그마한 감사의 뜻을 표시한다. 또 오랫동안 근속한 직원의 공로와 독행자(篤行者)의 미적(美績)을 표창하고, 아울러 문화 산업 등의 변천을 연모하면서 여러 가지 진전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설하여 장래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로 삼도록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가슴에 품은 바의 일단을 서술하여, 전 조선의 관민 제현들이 기념해야 할 시기를 통해 하나의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을 조선 통치에 있어 신기원이 될 준비와 각오로 매진하여 각각 그 기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소위 홍국의 위업을 대성(大成)하여 지존의 무거운 요청에 응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경복을 나누기를 아무쪼록 희망하고 염원해 마지않는 바이다.

〈출전 : 施政二十五周年二際シテ,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關係記錄』,
朝鮮總督府 編 1935년, 46~48쪽〉

10. 우가키 총독 및 사이토 전(前) 총독의 기념 방송

10월 1일 기념식전, 전몰(戰歿) 공로자와 순직자 초혼제 및 오후의 축하회, 원유회 등 을 성황리에 종료하였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부터 우가키 총독(관저) 및 사이토 전 총독(조선훗텔)은 각각 연단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시정 25주년 기념에 관한 아래와 같은 강연을 방송하고 조선인의 인식을 깊게 하여 많은 감명을 일으켰다.

시정기념일의 우가키 총독 라디오 강연 요지

회고해 보니 1911년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이래, 올해는 딱 4반세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여기 총독부에서는 도쿠다이지(德大寺) 시종, 전 총독 사이토 자작 각하 이외에内外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가운데 엄숙하게 시정 25주년 기념식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회고하고, 현상을 돌아보고, 나아가 미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서거하신 선현 공로자에 대해서는 그 혼을 제사하고 현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한병합은 일청, 일러의 양 전역(戰役)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말로 우리 일본 역사, 동양의 근세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와신상담, 실로 일본의 국운을 걸고 싸웠던 이 양 전역은 주로 조선의 사태에서 그 원인이 시작되었고, 이 일은 중요하고 또 용이하지 않은 큰 문제였습니다.

역사적 대사건인 일한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간은 빨리도 흘러 4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 25년 사이에 조선의 사태는 어떤 추이를 보였습니까? 이를 간단히 설명하기는 지극히 곤란하지만, 일례를 듣다면 한 그루 나무도 없던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울창하게 자라서 땔나무와 건축 재료로써 채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전 조선에 걸쳐서 길다운 길이 없어 도보자의 여행조차 괴로웠던 것이 오늘날에는 철도나 자동차도로가 사통팔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 걸쳐 이러한 현저한 약진의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지난날의 조선을 알고, 오늘의 새로운 조선을 보는 내외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로서 세 가지 수치를 들어서 시정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인구는 1배 반, 물자의 총생산액은 4배, 무역액은 16배가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산업, 경제 및 문화 모두 중세기의 잠들었던 상태에 있던 것이 지금은 각성하여 문명국에 가까운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메이지 시대와 같은 장족의 발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조선 내의 관민일치 총동원 하에 실행 중인 농산어촌진흥의 대운동이 착착 확대되고 철저해져 주변 상황의 변화와 아울러 비상한 속도로 일반 민중의 경제생활을 충실히 만들고, 또 한편으로 문화적인 각종 시설과 민중의 자각을 통해 물심양면으로 생활의 안정이 더욱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소위 낙토 신조선의 건설은 결코 꿈이 아니라 반드시 총의가 움직여 착착 실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점은 일반 민중이 해가 갈수록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내선융화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또 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쩐지 서먹서먹할 정도로 양자의 간격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우리 제국 국민들의 각오와 궁지가 인심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경제 및 문화의 진전과 사상 감정의 순화가 여기에까지 다다른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중세기의 많은 나라들이 세계의 미개발 지역을 식민지로 영유하고, 이를 모국의 번영과 자국민의 행복 증진의 희생물로 삼은 것에 비해, 일한의 병합 및 이후의 통치는 전연 그 취지가 다릅니다. 이해를 초월하여 순수한 정의관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는 제가 지금 삼가 읽은 일한병합의 조서(詔書)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더욱이 부가해서 말한다면, 총독정치 창시 이후의 통치 방침은 시종일관 일시동인의 마음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원래 같은 뿌리에서 나와서 면 옛날에는 거의 일가친척에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것이 이제 2, 3천 년을 넘어서 예전의 친밀한 사이로 환원하고, 원래의 친척 동포로 되었다는 역

사적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되살아난 것이 또한 유력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의 수는 25년 전에 비해 18배가 조금 넘었고, 보통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는 29배가 되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통혼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 이러한 경향이 가속하여 진행된다면, 다음 25년간에는 상상 이상의 변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른다면 일본인과 조선인은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 융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도달하여 비로소 반도 민중은 똑같은 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일본 동포와 함께 세계의 대국민으로서의 지위와 명예를 떨치는 데 이를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품고 있는 이상은 이러한 상태를 실현할 장래와 연결되어 있고, 통치의 고심도 시정의 노력도 역시 그 경지를 목표로 계속해야 합니다. 반도 동포의 희망도 똑같이 이에 귀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황송하게도 천황 폐하께서는 시정 아래 25년간 관민일치, 동심협력하여 오늘날의 융성을 이룩한 것을 기뻐하시어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산업, 문화 및 일반 민정을 시찰하시려는 생각으로 도쿠다이지(德大寺) 시종을 파견하셨습니다. 시종께서는 친히 조선의 각지를 순찰하시고 조만간 조선을 떠나실 것입니다.

조선으로서는 실로 이보다 더한 영광이 없습니다. 일동 모두는 성지(聖旨)의 넓고 심원하심에 감사하고, 오로지 황송할 따름입니다. 금후 관민은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여 시정의 창달과 민복의 증진에 분투하고, 천업(天業)을 크게 넓혀 고마우신 뜻에 따를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우리 제국은 자강독왕(自彊獨往)으로서 동양 평화의 확립과 세계 인류의 강령이라는 커다란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교목풍다(喬木風多)의 비유처럼 혼란한 세계정세가 파급되는 곳으로 언제 어떤 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 일치의 결의를 굳건히 하고 민력을 배양하여 국력을 충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조선이 분담할 사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선이 가진 천연 자원이 농림·수산·광업 등 다방면에 걸쳐 풍부하여 비상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큅니다. 이 땅에 2천만 동포가 함께하여 국운의 웅창에 공헌할 것을 자각하고 발분(發憤)한다면, 그 결과는 위대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선의 현실과 사명은 이를 종합하는 관점에서 모든 방면에 걸쳐서 엄중히 재인식해야 합니다. 반도 민중도 일본 동포도 이러한 깊은 뜻에 반성과 검토를 계울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이트 전 총독 라디오 방송 요령(要領)

오늘은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식전이 거행된 정말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저로서는 1921년 이래 전후 2회에 걸쳐서, 약 10여 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낸 깊은 연고가 있고, 약 4년 전에 조선을 떠났지만 조선을 항상 잊을 수 없었고 많은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초대를 받아서 조선에 오게 되자 마치 저의 고향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듯한 감개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부산상륙의 첫걸음부터 선로가에서 바라보는 산천의 경치나 반도 동포 여러분이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 그리고 경성 거리의 발랄한 활동, 알고 있는 관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힘찬 모습 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더구나 저는 근래 조선이 산업·경제·문화 등 전반에 걸쳐 비상한 약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25살의 청년이 된 우리 조선이 한 사람 뜻을 하는 훌륭한 모습을 갖추어 당당히 활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북부의 삼림지대 개발, 산금(產金) 사업과 경금속공업, 기타 각종 신공업의 발흥, 남면북양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산업·경제 방면의 발전은 근년 정말로 현저해서 마음으로부터 경축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농산어촌진흥·자력갱생운동이 수년 전에 시작된 결과, 주로 농촌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존경할 만한 수많은 인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관변의 보살핌 아래 활발한 갱생의 기운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약 8할이 농민인 조선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심의 각성과 생활의 충실을 기약해 나간다면, 한편으로는 상공업의 융성과 함께 엄청난 강점을 더하여 이야기로 소위 낙토 신조선의 이상향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당국의 노력과 정진을 방가(邦家)를 위해 기뻐하고, 반도 동포 복지를 위해 경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기뻐할 만한 여러 현상이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리자면 여러 상세한 원인을 들 수 있지만, 결론을 내린다면 이는 시정 이래 25년간 일본과 조선 양 민족이 과거 뿌리를 같이하는 관계로 복귀한다는 취지로서 극히 바람직한 융화의 상태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치의 정신과 시정의 방침이 서서히 이해되어 관민일치협력의 결실을 거두어 일반 시설이 진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즉 반도 동포의 행복을 같이하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내선 관계의 융합을 깊게 해서 혼연일체 일심이 되는 곳에 있다는 것을 과거의 사적이 잘 알려주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병합 이래 겨우 25년밖에 되지 않은 조선의 상태가 오늘같이 현저하게 발달, 향상된

것은 정말로 세계사적으로 아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바이고, 내외 식자가 모두 감탄해 마지않는 바랍니다. 생각컨대 여기에 이른 것은 메이지 천황 폐하를 비롯해 존경할 만한 여러 성현들의 위엄이 널리 높게 계신 것에 감격함과 동시에 또 일본과 조선에 걸친 수많은 선각자와 지성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두터운 관민의 노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총독부에서 개최한 서거하신 공로자 및 순직자의 초혼제나 장기근속자 표창 등의 의식에 임하여 저는 그저 깊이 감격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생각한다면 종래의 조선은 제국의 일부로서 오로지 모국의 보호와 보살핌하에 성장해 왔습니다. 자본 면에서 보아도 병합 이래 오늘날까지 군사비를 제외하고 조선에 투자한 일본 자본은 약 40억 엔을 넘었고, 또한 많은 지식과 기술이 이식되어 오늘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걸쳐서 조선 자체의 힘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행히 반도의 인심이 크게 흥기하여 간생, 신장의 의기가 지극히 왕성합니다. 젊은 조선이 쑥쑥 나아가는 힘은 마치 일본의 메이지 시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후의 발전을 예상하면 과거의 척도는 아마도 더 이상 쓸모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만주사변 이후 세계 형세는 급변하고, 동양에서 제국이 맡은 사명은 더욱 중대해졌습니다. 이러한 시국의 추이에서 일본과 만주국과의 중간에 위치한 조선의 지위는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중요합니다. 이 지위와 책임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새로운 의의에 선 신조선을 건설하는 일은 정말로 관민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사명입니다. 시정 25주년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한층 더 일본과 조선의 결합을 굳게 하여 동아의 시국에 대처하고, 낙토조선 건설의 이상을 내걸어 2천 3백만 동포의 복지를 향상 시켜 제국의 흥륭(興隆)에 공헌할 것을 절실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출전 : 宇垣總督及齋藤前總督ノ記念放送,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關係記錄』,
朝鮮總督府 編, 1935년, 55~61쪽〉

11.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 기념일 총독 유고(諭告)

이제 조선총독부 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통치의 신서(新緒)를 긋고 장래의 진운(進運)을 기약함에 있어 한마디 국내의 관민들에게 고한다.

대저 조선 통치의 대강(大綱)은 병합의 광모(宏謀)에 의해 정해지고, 서정(庶政) 모두 여기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 초대 총독 아래 통치의 임무를 맡은 자는 계통을 이어서 마음을 다해 치안의 유지·민중의 무육(撫育)에 노력해서 흥륭(興隆)의 토대를 배양하였다. 나는 대명(大命)을 받들어 임무를 이 땅에서 맡은 다음, 오로지 조정의 무궁한 혜택에 의해 선현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시운의 추이를 살펴 일을 이루는 데 허물이 없기를 기약했다. 이래 4년 간혹 제창한 바의 중요책략은 대개 시의 적절하게 화합해서 협력을 얻었다. 점차 백성의 복지에 도움이 되어 영화(寧和)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경사와 행복이다.

황송하게도 ‘천황폐하’께서는 시정 이래 관민일치, 동심협력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룬 것을 기뻐하셨다. 지금 다음의 기념거식을 계기로 특히 시종을 파견하셔서 반도의 산업, 문화 및 일반 민정을 시찰계 하신 ‘천황폐하’의 높고 깊은 배려에 황송하여 감격에 금할 길이 없다.

지금이야 제국은 밖으로는 화기(禍機)에 가득 찬 국제정세에 처해서 단독으로 동양평화확보의 중책에 임하고, 안으로는 바야흐로 크게 경론을 떨쳐 일으켜서 국운의 번창을 도모해야 할 때이다. 즉 반도 민중은 이 제국 내외의 정세와 이 지역의 사명의 위중함을 더욱 비추어 보고 국체의 정화를 더 깊이 체득하여 내선융합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혼연일체로 국력 강화와 동포 강복(康福)의 중진을 기약해야 한다. 이야말로 정말로 천업(天業)을 넓히고, 성지(聖旨)를 받드는 길이다. 지금 25주년 시정의 귀추가 역력한 것에 의거하여 여기에 한 시기를 그음과 동시에 심기(心機)를 더 새롭게 하여 정진하고 충심으로 화목하여 가까운 장래에 치업(治業)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관내의 관민은 이 뜻을 잘 이해하고 협력에 힘쓰기 바란다.

〈출전 : 朝鮮總督府施政二十五周年記念日に於ける總督諭告,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朝鮮總督府 編, 1937년, 7~9쪽〉

12.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도지사 훈시

훈시 요지

도지사

이번에 취임한 이후 제2차 지사회의를 소집해서 여러분과 상견하여 친밀한 시정의 표방에 대해서 믿는 바를 피력하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관하(管下) 사정을 보고받고 여러 가지 정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지난 여름 첫 회의에서 훈시한 바가 있어 그 취지에 철저한지 알아보고, 또 저 스스로 지방의 현상에 대한 인식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번 조선 각지를 순시했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바라는 바를 상세히 시찰할 시간을 얻지 못했지만, 지엽적인 것은 생략하고 대체로 제가 바라는 바에 비추어 여러 가지 정사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의욕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반도 시정을 위해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특히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구체적 시책은 별도로 정무총감이 훈시하고 지시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간략히 저의 근본방침인 5강목(綱目)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체명징(國體明徵)

현재 세계의 정세를 관찰하면 열강 간에 일촉즉발의 위기는 잠시 완화되는 감이 있지만, 여전히 서구의 일각에서는 화란(禍亂)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 사상 · 경제 각 방면에서 국제 간의 마찰과 상극은 더욱 착종(錯綜)하여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상황은 화평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몇 군데에서 양성되고 있는 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국에 직면해서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유일한 안정 세력으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 정의를 드러내고 문화를 선포하려는 빛나는 제국의 진실한 사명을 한결같이 명확히 인식하고 견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치안 상태는 여러분의 조치가 적절하여 대개 안정을 유지하여 민서(民庶)가 안도하고 있지만, 민중 일부는 아세아 및 세계의 대국을 바라보지 않고, 고루한 민족주의적 편견에 기인하는 것 이외에 공산주의자의 잠동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심을 해치는 것은 시정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사명 달성 상 반도가 분임하는 책무에 비추어 진실로 궤멸(潰滅)하는 것입니다. 이를 절멸하고 소

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체결된 일독방공협정의 목적도 국민은 그 참된 의의를 잘 이해함과 동시에 그 취지를 충분히 양양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국 9천만 동포가 혼연 일체되어 결연히 시국의 어려움을 해쳐 나아갈 때입니다만, 거국일치·상하일심으로 천업(天業)을 넓히고 황도(皇道)를 선양하기 위해 가장 간절한 것은 국체관념의 명징입니다. 특히 조선에서 한층 더 그 절실함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국체관념을 명확히 밝히고 중서(衆庶)의 국민적 신념을 확고하게 배양하는 것은 진실로 반도 시정의 근본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령 여러 행정에 아무리 좋은 점을 구현하였다 하더라도 이 근본에 철저하지 못하면 허울만 있는 겉치레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순시 때에도 각지에서 신사참배의 근행, 근엄한 황거 요배·국기 게양의 장례·국가의 존중 내지 일어 보급의 권장에 관한 적극적 시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가장 기뻐하는 바입니다. 강내(疆內) 민중 한 명도 원망하지 않고 만방에 유례 없는 국체의 승 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천하에 탁절(卓絕)한 국체의 정화에 대해 지대한 감격에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 반도 시정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시책과 기회에 국체관념의 명징·철저를 위해 각 골명심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선만일여(鮮滿一如)

맹방 만주국의 건전한 발달의 옹호야말로 우리 제국 국책의 중심이고, 또 일본과 만주(日滿) 불가분의 광도(宏圖)는 만주국 건국의 근본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만주국에 접壤(接壤)할 뿐만 아니라 일만 관계에서 반도가 점하는 지위는 특히 중요합니다. 즉 일만일체(日滿一體)의 필연적인 내용으로 선만일여의 실체 성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은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을 소위 국경으로 하기보다도 차라리 조선과 만주(鮮滿)를 형제의 올바름으로 묶는 친화의 축대이고, 산업·경제·문화·국방을 서로 긴밀하게 제휴해 나가야 합니다. 반도 시정의 체험과 그 실적 및 남김 없는 자원력으로 만주국 국세의 발전 신장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흥 만주국의 활발한 여러 시설 및 그 수행력의 과단은 우리 조선을 위해 참고할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양자는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시책은 서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조장해야 하고, 각각 그 독선(獨善)을 절대로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착임 이래 선만일여의 실현을 위해 각각의 시책에 힘써 왔습니다. 전에는 국경에서 관동군 사령관과 회견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또 산업·경제·교통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협의·협정을 했습니다. 국경교량협정·비화(匪禍)

및 밀수의 공동대책·압록강 공동 기술위원회 설치·통관협정·우편협정·수력발전협정·국경가목 사선건설의 촉진·북선(北鮮) 3항 건설의 확충 등을 실시하였고, 또 선농에 의한 만주국 농업의 개척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주국에는 산업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 계획의 실행과 조선의 산업, 경제의 진로는 서로 잘 호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방침의 구체화를 위해 더욱 노력 매진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선만 무역진흥에 관한 회동을 실시하는 것 또한 그 시책의 일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유의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관하(管下) 관민 모두에게 위의 방침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 인식시켰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첫 순시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아직 그 진의를 얻는 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선만일여 본래의 정신의 주지에 대해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3. 교학진작(教學振作)

교학의 진작은 국가문운융성의 근본이며 원동력입니다. 본부에서는 본 연도부터 조선인 초등교육 배가확충계획을 실시하고 또 중등교육총실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 그 완성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반도 교육의 근본주의인 교육 수산(授產)의 병진, 실학교육의 고양, 국민체위의 향상, 개념적·추상적 교육의 배제 등은 더욱 이를 강조하고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학에서 국민정신의 함양입니다. 국민 교육의 근본은 실로 국민정신의 계몽과 배양에 있습니다. 국민성을 도야하고 국민 도덕을 단련하여 작열하는 국민적 신념을 널리 세우는 것이 국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조해 온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를 교육 실제의 현상에서 보면, 근본문제의 철저함에 있어 약간 비판할 점도 있습니다. 지육(知育)과 편의(偏倚)의 폐해를 제거하고 국민정신의 근본을 철두철미하게 배양하여 교학의 본지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제2의 국민을 육성하는 초등교육에서 자녀의 심혼의 깊은 곳에 ‘우리는 일본 신민이다’는 강한 신념과 긍지를 견지하게 만드는 것이 특히 조선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절실하고 긴요합니다. 또 중학·전문·대학의 각 교육은 진실로 장래 사회에서 지도적 지위를 담당할 사람의 육성이므로 그 중요함은 더욱 간절합니다. 모름지기 교학의 최종 지표는 국민정신의 함양에 두어야 하고, 제가 주장하는 교학진작의 안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책으로서 교육자 스스로 국민적 신념의 심화, 정신의 단련, 품성의 도야에 더욱 노력해서 그 향기가 우리나라들이 감화력을 지대(至大)하게 할 것과 특히 일본어 교육의 철저한 보급 등에 관해서도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기 바랍니다.

4. 농공병진(農工併進)

세계의 대세 특히 긴급한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서 제국 국방력의 충실은 초두의 급무입니다. 오늘날 국방을 육성하기 위한 생산력의 증강이 제국 산업 경제의 당면한 긴급 문제로 제창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조선은 지리적·자원적으로 짊어진 중대 책무에 비추어 국책의 대강(大綱)에 순응하고, 일만일체·선만일여의 커다란 방침에 근거하여 산업의 전면적 전진·전개를 도모하여 국가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고 아울러 산업 대중의 후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산업 현상 및 장래를 대관(大觀)하면, 농·임·수산업의 각 부문에 걸쳐 시정 이후 열심히 노력한 결과, 특히 최근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철저함에 의해 화룡점정(畫龍點睛)되어 그 진전이 실로 현저합니다. 장래에는 농경지 배분이용의 개선, 농업경영의 합리화, 공업원료 생산의 촉진, 산업물 처리의 합리화, 어장의 개척 등에 대해 연구를 더욱 많이 쌓아 이를 실행하고, 아울러 농산어촌진흥운동을 더욱 강화·확충하여 그 대성을 기해야 합니다.

조선은 그 전 강역(疆域)에 걸쳐 농·축·임·수 각 생산 자원을 비롯해 수력·지하자원 등 진실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완전한 이용과 활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금후 우리의 책무입니다. 특히 반도에서 인구 증가가 현저하고, 남선(南鮮) 방면에는 이미 그 과잉 현상조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하늘이 내린 물적 자원력으로 생각할 때 반도에서의 각종 공업은 진전 가능한 소지, 조건에 혜택받은 바가 지극히 크고, 앞길은 진실로 다망 다채롭습니다. 곧 공업 조선의 건설이 날이 갈수록 진척, 실현되고 있는 것은 경축할 일입니다. 광물자원·발전수력의 개발 촉진, 국책공업의 유도, 여러 공업의 합리적 분포, 중소공업의 진흥, 노동효율의 향상 내지 이에 대응할 금융의 원활, 교통·무역의 진작 등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양다기(多樣多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농·축·임·수산업의 공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히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본부에서는 연구 중이지만 여러분도 각각 연구하기 바랍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농공병진은 조선 산업 진전의 큰 표어입니다.

저는 착임 당초 풍수서(風水書)를 보고 발본색원적인 치수정책의 수립이 긴요하다고

통감했습니다. 우선 치수의 근본인 치산에 대해서 연 단위로 계획을 세워 조선 내 전역에서 민동산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대하천을 개수함과 동시에 중소하천의 개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국토의 보전, 인심의 안정을 얻어 반도 문화·산업의 향상과 진척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충분한 협력을 간절히 바랍니다.

5. 서정쇄신(庶政刷新)

대저 행정은 국가의 꼭 필요한 것에 대응하고, 세무(世務)의 활기에 적합한 것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국세세태(國勢世態)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변천합니다. 이에 따라 대처해야 할 행정의 운영 또한 하루라도 막혀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서정쇄신이 긴박한 이유입니다.

더욱이 행정은 민중의 요망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심의 귀향은 시류와 함께 바뀌고 그 희망하는 바는 복잡합니다. 이를 통찰하여 시행하는 데 그 마땅함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항상 개선과 변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서정쇄신을 잠시라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대저 서정은 고식(姑息)을 가장 많이 꺼립니다. 인순미봉(因循彌縫)은 위정자가 경계하고 삼가야 할 것입니다. 서정은 답답하고 막히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시정의 요체입니다. 요동치는 새롭고 예리한 기력이 우리의 행정에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서정의 실제를 보면, 자주 논리와 형식에 구애받아 진실로 민인 복지의 증진에 배치됩니다. 또 자칫하면 오래된 관습을 끝까지 지켜 오히려 당대 시무의 긴급함에 합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관청 본위로 민중의 편익을 무시하는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은 행정 성과를 올리는 데 급급해서 의도나 방침을 이해시키는 데 빠뜨린 것이 없는가에 대해 노력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질주의를 채택하는 것, 번잡한 것을 물리치고 구습을 탈피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 민심의 귀향을 살펴서 시행하는 데 적절을 기해야 할 것, 일본 서정 시책의 취지방침을 충분히 선포하여 주지시켜 알게 하고 또한 이러한 연유로서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 등이 서정쇄신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더구나 쇄신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의 비근(卑近)·은미(隱微) 간에 적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행정의 실제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궁리했으면 합니다.

서정의 쇄신과 창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기구·시설 등의 시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이고, 특히 관공리의 각오 여하, 심의정신의 연마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대저 관공리인 자에게 그 본분을 깨닫고 지켜서 국가의 민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공한다는 큰 용맹심, 큰 의기가 있는지의 여부가 그 근본이고, 그것이 없다면 서정의 쇄신은 끝내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 장관인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결심을 견지하여 적재적소를 활용하여 충분히 그 기백과 수완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저의 소견에 대해 그 주지(主旨)를 약술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읊미하고 그 진의를 체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37년 4월 20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37년 4월 21일〉

13. 취임 시의 총독 유고(야마나시, 사이토, 우가키, 미나미 총독)

[13-1]

불초 생각지도 않게 조선총독의 대임을 맡았습니다. 재주도 없어 이 중임을 잘 감당 할 수 있을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만, 공명정대하게 이 한 몸을 바치고 관민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 분투노력해서 성명(聖明)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대저 조선 통치의 근본방침은 일찍이 일한병합의 대계로 정해졌습니다. 영원히 변하는 것이 없다고 해도 여기에 기초한 시설과 경영에 대해서는 시운의 추이와 민도의 향상에 따라 완급의 묘를 정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조선총독부 시정은 이미 10년 하고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제반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오늘날 조선을 병합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거의 모두가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외가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렇지만 조선 통치는 국가 백년의 장계(長計)에 속하고, 그 공을 이루기까지 전도(前途) 또한 여전히 요원합니다. 아직 작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부터 한층 더 분발하여 이미 정해진 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각종 시설의 개선 충실에 힘을 다하는 것은 물론, 일진일신(日進日新)의 국시(國是)를 기본으로 시운에 적응하는 기획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제, 문교, 기타 제반의 시설을 펼치고, 실제 생활에 합치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반도 2천만 동포를 애무하고 기타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리를 증진하여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하는 데 모든 방법을 다 쓰기 바랍니다. 관민 여러분은 눈을 대국(大局)에 걸치고 통치의 홍도(鴻圖)를 보좌하여 상근일가(桑槿一家)와 공존공영의 일한병합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강내(疆內) 평온하고 민심의 귀추가 안정되어 그 울타리에 안주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사상이 동요하고 과격하게 날뛰는 조짐이 있는 것은 정말로 우려할 만한 사태입니다. 이의 선도에 힘쓰고 착실하고 강건한 기풍을 양성해야 합니다. 진실로 사추(邪推)에 근거하는 비판에 의해 시정의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어 통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일본과 조선의 친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있다면 추호라도 봐주는 것 없이 단호히 처치해야 합니다. 관민 여러분은 이를 잘 알기 바랍니다.

1927년 12월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

[13-2]

불초 생각지도 않게 다시 조선총독의 대임을 받아들여 앞으로 임무에 임하려고 합니다. 회고해보면 이전에 이 땅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통치에 임하여 치안의 유지 · 문화의 흥륭, 여기에 경제의 발전 등 치화(治化)의 보급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정도 지나서 다행히 건강이 회복되어 천황폐하의 명령이 내려 꿈에서도 잊을 수 없던 이 땅에 통치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감히 노구를 이끌고 봉사할 것을 굳게 각오합니다. 이제 이미 정해진 계획의 완성에 힘을 다할 것은 물론, 민도의 향상을 돌아보고 민의의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국운에 대응하여 상황에 맞은 조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강(紀綱)을 숙청해서 관청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하고 인심을 일신하여 그 나아갈 바

를 밝혀야 합니다.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더욱 민력의 발달을 도모하고, 백성들이 영원히 황택(皇澤)을 입게 하여 서로 이끌고 방가(邦家)의 융성을 도와 병합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기약합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천천히 기획하려고 합니다만, 강내 관민들은 이를 양해하고 더 한층 협력하기 바랍니다.

1929년 9월 6일
조선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13-3]

이번에 조선총독의 대임을 맡게 되어 관내의 관민들에게 한마디 고합니다.
대저 조선 통치의 대계는 일찍이 정해진 것으로 역대 통치의 임무를 맡은 자 모두 이 정신에 입각하여 이 땅의 치안을 유지하고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민중 또한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국은 실로 편안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외의 현세와 조선의 실정상 앞으로 여러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한번 생각해보면 대국(大局)을 더 잘 통찰하여 냉정을 찾고 관민일치의 노력을 통해 서서히 흥륭의 바탕을 배양해야 합니다. 동양평화의 확보, 민중 경복(慶福)의 증진을 도모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요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저 관내 일반 행정·문화·경제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세운(世運)과 경지(境地)에 적응해서 구투(舊套)에 집착하지 않고, 신기(新奇)를 자랑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조금씩 나아가 만전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저 통치의 요체는 민의를 창달하고 정리를 다하여 사상의 융합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힘껏 공론허식(空論虛飾)을 피하고 매진하여 실행하는 것을 기약하는 데 있습니다. 관내 관민들이여, 이를 양해하고 협력 기여를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1931년 9월 6일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3-4]

이번에 조선총독의 대임을 맡아 임무를 맡게 되어서 관내 관민에게 고합니다.

대저 조선 통치의 대계는 병합의 성조(聖詔)에 연유하고, 대강(大綱)은 일찍이 정해졌습니다. 시정 아래 역대의 통치자는 황유(皇猷)를 받들어 오로지 주책(籌策)을 시행한지 25년, 이제 정치의 결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과거의 모습은 거의 일변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의 정세는 모든 것이 협약하여 제국의 치우 또한 용이하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크게 국민정신의 도야, 경제실현의 강화를 통해 국민 능력을 진작 장양(長養)하고, 동양평화의 근본인 일만일체의 커다란 계획을 이루어 양국이 함께 번영하는 결실을 기르는 것이 필수 긴요한 시무이기 때문에 조선이 짊어진 사명은 더욱 큽니다. 즉 인적·물적 양 요소에 걸쳐서 내선일여, 조선과 만주가 서로 의존하는 경지를 통찰하여 자원을 개발해야 합니다. 민심을 계몽하고 진실로 굳세고 강한 국민으로서 흠잡을 것 없는 생활의 기준을 이루는 것은 아마도 통치의 종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에 의거하여 그러한 이상으로 달려가는 길은 더 크게는 황도국가의 근본을 인식하여 인화를 두텁게 합니다. 문화·산업·경제의 모든 기운을 촉진하여 민도의 향상과 공익의 증진에 힘써 물심양면의 만전을 기하는 데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 총독이 통치의 전서(前緒)를 계속하여 실시한 것은 전례를 밟아 그 적정한 발전을 기약하는 것은 물론, 시운의 추이에 더 잘 대응하여 민의의 소재를 존중하고 거화취실(去華就實)을 본지(本旨)로 삼아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관민들이여, 이를 살펴 방가(邦家)를 위해 진실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1936년 8월 27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출전 : 就任に際しての總督諭告(山梨 齋藤實 宇垣 南),
『朝鮮施政に關する諭告訓示並に演述集』, 朝鮮總督府 編, 1937년, 1~5쪽〉

14. 미나미 총독, 본기(本期)의 시정방침

육군대장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6년 8월 5일자로 조선총독의 인수(印綬)를 맡게 되어 같은 달 22일 도쿄(東京)에서 성명서를 내었다.

“전 총독 우가키(宇垣) 각하의 연달(練達), 적절한 시설과 일관되고 비범한 노력을 통해 이제 강내(疆內)의 인심은 안정되고, 산업과 경제의 개발은 실로 눈부십니다. 불초(不肖) 부족한 재능으로 깊이 재어보지도 않고 총독의 중임을 받은 이상에는 조서(詔書)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선배 각위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 올린 치적에 한층 더 충실히 노력하고, 민력의 발달 · 강복(康福)의 증진 ·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더 나아가서 진실로 내선융화의 결실을 올려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에 부합하고 싶습니다. 생각건대 동양평화의 근본은 일만 양국의 불가분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과 만주국은 접壤(接壤)의 관계에 있으므로 두 민족은 진실로 한 몸으로 공존공영을 기약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하고 먼저 조선 통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착임하는 대로 도지사회의를 소집하고(1936년 9월 24일 제1차 도지사 회의), 전기의 중심 시설인 농산 어촌진흥운동의 근본방침은 개변하지 않을 것, 기타 통치상의 중요정책도 전서(前緒)를 계속해서 완성할 것을 기약하였다. 특히 일본 · 조선 · 만주를 일관하는 하나 되는 경륜(經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다음해 1937년 4월 제2차 도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국체명징 · 만선일여 · 교학진작 · 농공병진 · 서정쇄신의 5대 정강의 발표를 통해 정치의 나아가야 할 바를 천명했다. 이는 곧 앞에 기록한 성명에 호응하는 것이고, 동시에 향후에 처리할 서정 전개의 구체적 지표이다. 더욱이 1937년 3월 14일, 마침 5개조 맹세문 봉대(奉戴) 17주년 기념일에 해당하여 총독의 근화를 발표하여 조선은 동아진호(東亞鎮護)의 자주적 경륜 하에 확고부동한 국시(國是)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한반도는 만선일여(滿鮮一如) · 일만일심(一滿一心)의 실질을 거두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 문화개발의 제2차 4반세기의 벽두(劈頭)에 서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로써 본기 시정의 근본방침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필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비상시국에 직면하고 또 그 일상화에 따라 반도통치의 사명에 한층 부하(負荷)가 가중되었지만, 위의 5대 정강에 조그마한 개변(改變)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의 완수야말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유일의 방법이다. 따라서 본기의 시정은 바로 앞의 5대 정강의 강화 · 구현과 시국체제의 철저 확충

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본기 시설의 최대 방침이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에 있다는 것은 미나미(南) 총독 자신이 단언하는 바이다.

“본 사변이 가져온 직간접의 형이상하(形而上下)에 걸친 영향과 우리가 시행하는 사적을 검토하면 5대 방침은 통치의 근본 취지인 내선일체의 본류를 따라 한층 새로운 의의를 지니고 그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1938년 4월 도지사회의 훈시)라고 말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즉 구체적 시설로는 교육령이 개정되고,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 씨제도(氏制度)의 창시·중앙협화회(中央協和會)와의 연합 등이 이루어져 근본정신이 현저하게 본기에 광채를 띠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반도가 대륙전진기지라는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요소 이외에 물화적(物化的) 요소의 완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자원 개발 장려와 산미증산계획의 재흥, 기타 중요한 시설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국가총동원법의 발동은 반도 시설의 일본 종속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시경제하에서 조선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중대하다는 것을 감명시켰다.

또 본기의 일대 특색인 선만일여·일만불가분(日滿不可分)의 이상 실현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대로이지만, 1937년 10월 조선총독과 관동군 사령관의 도문(圖們) 회견 이후 도독과 밀수의 공동대책을 비롯해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의 교량건설, 압록강 공동기술원조직 및 수력발전계획, 우편수송의 간첩(簡捷) 및 전화의 접속 등 치안·산업·교통·문화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협정을 실현하여 양자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다음에 본기에서 특기할 것은 시국에 대한 처리 외 1939년 여름 조선 전체가 입은 미증유의 한해대책이다. 전진병참기지라는 사명을 가진 반도가 시국하에 이러한 참화를 만난 것은 실로 다대한 타격이다. 대책상 가장 필요한 것은 심적·물적 두 방면의 진흥을 같이 기약하는 것이지만, 다행히도 전기 이래 본부가 열심히 장려해 온 농촌진흥자력갱생운동은 마침 이에 적합한 것이다. 또 제작년 이래 활동, 발전해 온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애국반의 활동은 전자와 함께 시난극복(時難克服)과 생업보국(生業報國)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출전 : 本期の施政方針, 『施政三十年史』, 1940년, 409~412쪽〉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II

Ⅱ. 치안유지법

1. 법령과 해설

1) 치안유지법(1925)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 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
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 역시 같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

제7조 본 법은 누구든지 이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923년 칙령 제403호는 폐지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5년 4월 27일〉

2) 치안유지법 개정(1928)

1925년 4월 21일, 법률 제46호

개정 1928년 6월 29일, 칙령 제129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 2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조 전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목적으로 소요 · 폭행 기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만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 역시 같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본 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역시 적용한다.

부칙

1923년 칙령 제403호는 폐지한다.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8년 7월 4일〉

3) 와카즈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치안유지법 제안 설명(귀족원)

치안유지법안(정부제출) 제1독회

(상략)

○ 국무대신(若槻禮次郎, 와카즈키 레이지로)

우리나라에서 무정부주의자·공산주의자·기타 운동이 최근 현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독일의 혁명에 관한 과격한 정보는 일부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그 운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일부 사람 중에는 외국의 동지와 통모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모아 과격한 운동을 계획, 실행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운동 자체도 조직적이고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각종 사회운동도 점차 격렬해지는 상황을 기화(奇貨)로 이들은 위험한 사상 행동을 고취하여 운동을 악화시키거나 사회주의적 과격운동과 제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러시아의 국교도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들 간의 상호 왕래가 빈번해져 과격운동자는 각종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각종 사회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왕성해질 것이고, 과격한 사상을 가진 자들은 제국의 치안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불온한 행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들에 대한 단속법규로는 형법,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이 있지만, 그 규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는 위험한 행동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대개 가벼운 것으로 끝납니다. 벌칙을 각오하고 불온한 행동을 감행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안을 입안했습니다만, 법안의 내용은 만세일계의 황실을 반드시 데 있습니다.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려는 것, 또 메이지 천황 폐하의 넓으신 마음으로 만들어진 우리 입헌 정체를 변혁하여 의회를 부인하려는 것,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에서 부인하여 공산주의를 실행하려는 것처럼 우리 국가조직의 대강(大綱)을 파괴하려는 불온한 결사, 그 모의와 선동 및 범죄를 양성(釀成)할 목적에서 나온 금품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여 현재의 과격한 사회 운동에 보이는 가장 중대한 위험과 폐해를 적게 함과 동시에 일반 사회를 경계하여 불온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본안의 취지

입니다.

신중히 심의하시어 본안에 협찬(協贊)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략)

〈출전 : 『治安維持法提案討議—帝國議會に於ける質疑應答議事』,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編纂, 1928년, 2~3쪽〉

4) 반도우 고타로(坂東幸太郎), 반대의견(중의원)

(상략)

○ 반도우 고타로(坂東幸太郎) 군

저는 유감이지만 이 원안 및 위원장의 보고에 반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법규, 더구나 그 내용이 아주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법규를 만들 경우에는, 그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사회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과거 정부는 자주 본 의회 혹은 위원회에서 공산당 사건과 유사하게 비밀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이유는 여전히 이런 중대한 법안을 만드는 이유로는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례로,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는 사건의 하나, 마침 제 선거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쇄단사(鎖斷社)라고 부릅니다만, 정부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쇄사슬을 끊는 결사라는 것을 거의 공산주의 혹은 무정부주의의 결사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창기(娼妓)의 자유폐업, 창기의 쇄사슬을 끊는다는 의미의 결사입니다. 중앙의 경보국(警保局)에서는 이 사건을 실로 중대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바로 그곳의 사람입니다. 아사히가와(旭川)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번 그들은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더욱이 검사는 이를 공소하였는데, 아사히가와의 일반 시민은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면(書面)도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7사단의 고이즈미(小泉) 소장 암살미수사건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는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판명되어 불기소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 당국은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는 거의 신문지상에 나온 사건으로 죄가 무거운 자라도 1년 정

도의 형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미세한 것을 아주 큰 사건인 것처럼 비밀회의에 붙여 국민의 공정한 여론을 듣지 않는 것은 실로 정부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되는 바랍니다.

와카즈키(若槻) 내상(内相)의 설명 중에도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가 발호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극히 미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금고형에 처한다는 무거운 형벌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 누누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도 질의응답이 있었듯이, 이 법규는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그 법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체의 변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을 군주국에서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에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부인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헌법 중의 조문 혹은 군대의 통수권에 관해서 혹은 선전·강화·기타 천황의 대권사항에 관련하여 헌법의 개정론을 주장할 경우,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역시 국체의 변혁으로서 적당히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를 적용하는 관리의 잘못이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 관리가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많은 괴로움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1915년 이래 보통선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만, 한때는 과격론자로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1915년 도쿄에 왔을 때는 형사가 따라왔습니다. 더구나 저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인간으로서 스스로 국가주의를 선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정부의 분노로 좌경파로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생각해보아도 사법관 혹은 경찰관이 (와카즈키 내상과 같은 훌륭한 인격자라면 잘못은 없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법률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또 의회부인론을 단속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부인론은 재앙 전까지는 상당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주의자를 견지하며 제 친구 중에도 의회부인론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기회에도 의회부인론에 정면으로 반대해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재앙 전에 비하면 의회부인론은 기운이 쇠퇴하고 지금은 국가주의가 아주 왕성해졌습니다. 저는 1922년 과격사상 단속법 안 때에 비교하면 과격한 사상이라는 것이 아주 약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회부인론과 같은 것은 일종의 정치사상 문제입니다. 정치사상 문제에는 당연히 사상으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사상으로서 이에 대항하고 이제는 저의 주장이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요코야마(横山) 군도 말했지만 아무리 변론을 해도 23년 이전보다 지금은 명확히 사상이 온건해졌고, 적어도 의회부인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운이 쇠퇴했다

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 의회부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세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에서 소위 인민 측에서 과격하게 의회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가가 하나의 정치적 이상에 근거하여 이 설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의회가 면 장래에 어떤 형세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의회를 두기보다는 차라리 군주독재정치 같은 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의회를 부인하는 의미의 정치가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괄하여 의회부인론으로 간주하고 이는 국체를 변혁하거나 정체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여 이를 국적시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특히 금후 우리나라의 중대 문제는 조선과 대만의 문제입니다. 조선과 대만의 문제로서도 아주 넓은 의미의 자치권을 주장한 경우, 이것도 만약 이 법규를 남용한다면 역시 국체의 변혁, 정체의 변혁으로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과 대만은 일본에 있어서 진실로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 점은 실로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유재산의 부인입니다만, 앞에서 야마자키(山崎) 군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간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합법이든 불법이든 혹은 임의적으로 부인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합법적 부인이라는 것은 확실히 정부도 답변 중에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원외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어떤 의미의 재산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 의원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마자키 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야마자키 군과는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박수)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인 경우, 즉 정당이 그 정강으로서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해 이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어떤 부분은 정부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원 일부가 합법적인 사유재산의 부인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커다란 모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박수)

(하략)

〈출전 : 『治安維持法提案討議—帝國議會に於ける質疑應答議事』,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編纂, 1928년, 100~102쪽〉

5) 와카즈키 레이지로, 치안유지법 제안 설명(중의원)

○ 국무대신 와카즈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군

본안 제출의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정부주의자·공산주의자·기타 운동이 요즘 현저히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러시아, 독일의 혁명에 관한 과격한 정보는 사람들을 일부 자극하고, 운동을 한층 심각하게 이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외국의 동지와 통모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모아 과격한 운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려고 합니다. 운동 자체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각종 사회운동도 점차 격렬해지는 상황을 기화(奇貨)로 위험한 사상 행동을 고취시켜 운동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사회주의적 과격운동과 제휴하려고 노력하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일본과 러시아의 국교도 조만간 회복되겠지만, 그 결과 서로 왕래가 빈번해져 과격 운동자는 각종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각종 사회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왕성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과격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제국의 치안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불온한 행동으로 나오는 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한 단속법규로는 형법, 치안유지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이 있지만, 그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제대로 단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개 가볍게 끝납니다. 이는 벌칙을 각오하고 불온한 행동을 감행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를 얻을 수 없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본 법을 입안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국체 정체의 변혁, 사유재산 제도를 근본에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우리나라 조직의 대강(大綱)을 파괴하는 불온한 결사, 그 모의와 선동 및 서술한 범죄를 조성 할 목적에서 나온 금품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여 현재의 과격한 사회운동에 있는 가장 중대한 위험과 폐해를 줄임과 동시에 일반 사회를 경계하여 불온한 행동으로 나오는 일을 예방하려는 것이 본 법률안을 제출한 대체의 취지입니다. 부디 신중히 심의하시고 협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출전 : 『治安維持法提案討議—帝國議會に於ける質疑應答議事』,
高等法院 檢事局 思想部 編纂, 1928년, 124~125쪽〉

6) 조선사회운동단속법 요의(要義)(1932)

제1편 일반법령

제1장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제정의 취지

세계 제1차대전 이후 우리나라에서 각종 사회운동은 한층 더 격렬해지고 노동자와 농민 운동이 현저히 발전하였다. 무정부주의·공산주의 운동은 더욱 심각해지고 일부는 외국 동지와 공모하거나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더욱 과격한 운동을 계획, 실행하고 있다. 운동 그 자체도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일반 사회운동이 타오르는 것을 기회로 그들에게 위험한 사상, 행동을 고취해서 운동을 악화시키거나 사회주의적 과격운동과 제휴하려고 노력하는 정세인 것인가.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국리, 민복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조직의 대강(大綱)을 파괴하려는 무정부주의, 사유재산제도를 근저(根底)에서 부인하는 공산주의와 같이 과격한 것은 이를 실행수단으로 옮길 때 위해(危害)를 미친다. 그 국가,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것이 다른 범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 각자가 서로 경계하여 이를 배격해야 하고, 국가는 자위(自衛)의 수단으로서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단속법규로서 형법과 기타 법령이 있어도 그 규정이 불충분하여 위험한 행동을 완전히 단속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 할 뿐만 아니라 그 별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도 대개 가벼운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별칙을 무릅쓰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단속의 실질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치안유지법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해서 1925년 4월 법률 제46호에 의해 제정되었다.

제1절 치안유지법과 다른 법령의 관계

1. 본 법과 형법의 관계

치안유지법은 국가 형벌권을 규정하는 형법에 대해서 특별권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로 본 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형법과 본 법은 중복되는 범위에서는 법규의 경합을 만들고, 형법 제54조에 의해 무거운 쪽으로 적용해야 한다.

형법 규정과 본 법 규정의 외관이 중복하는 것은 형법 제77조와 본 법 제1조 내지 제4조로 형법 내란의 죄는 조헌(朝憲)을 문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동을 행사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형법 제79조는 그 예비 및 음모를 벌한다. 조헌 문란은 본 법에 소위 국체의 변혁,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비롯해 그 범위가 넓고, 후자는 당연히 전자 안에 포함된다. 단지 본 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의 결사 조직·가입, 그 조직원이나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 혹은 결사의 목적 수행의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사항의 실행 협의 또는 선동을 벌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들은 직접 선동을 하는 것의 예비 또는 음모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본 법은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폭행 협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형법 제79조와 본 법 제5조는 외관상 중복한다. 이 두 법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본 법 제5조는 형법 제79조에 비해 그 규정하는 바가 자세하고 그 범위가 명확하다.

2. 본 법과 출판법·출판규제의 관계

출판법·출판규제에서 규정하는 사항에서 본 법의 규정과 중복하는 것은 정체를 변괴(變壞)하거나 또는 조헌을 문란케 하는 사항,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항 및 범죄를 선동하는 사항이다.

출판법(1893년 법률 제15호)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출판법(1909년 법률 제6호)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즉, 출판물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본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고 정체를 변괴(變壞)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하는 것은 본 법에서 소위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말하는 것보다도 그 범위가 넓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출판법에도 저촉되고 본 법에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죄로 삼아 형법 제47조를 적용해서 처단해야 한다. 본 법에 저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법에 의해 처단해야 한다.

3. 본 법과 신문지규제 및 신문지법의 관계

본 법과 관계를 가진 이러한 법령을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신문지규제(1908년 법률 제12호) 제10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신문지법(광무(光武) 11년(1907년) 7월 법률 제1호) 제11조, 제13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신문지상에 사상의 발표를 제한하는 사항은 출판법이 정하는 바와 대략 비슷하고, 어떤 사안이 양 법에 저촉할 때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병합죄를 성립시켜 형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처단한다. 이는 출판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해도 된다.

4. 본 법과 보안법의 관계

본 법의 규정과 보안법의 규정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보안법(1907년 법률 제2호) 제7조의 규정으로, 동 법조는 1919년 칙령 제7호의 규정공포에 의해 제령(制令) 제7호와 보안법 제7조가 저촉하는 부분은 자연 폐지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적용범위는 매우 감소되고, 본 법의 제정으로 더욱 축소된다.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동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국체의 변혁,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이상 본 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본 법 또는 제령 제7호에 의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해야 한다.

5. 본 법과 제령 제7호의 관계

1919년 제령 제7호와 치안유지법은 그 내용 및 양태(樣態)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양자 공통의 구성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법문상 명확하기 때문에, 제국의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배척하고 조선의 독립을 기획하는 실행방법으로서 그 결단에 참여하는 것은 제령 제7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치안유지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제령 제7호는 이후 1925년 법률 제46호 및 1928년 칙령 제129호의 치안유지법이 실행된 결과, 당연히 동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폐지해야 한다(고등법원 1930년 5월 25일 형사부 판결). 따라서 어떤 사안이 본 법에 저촉됨과 동시에 제령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해도 이에 형법 제47조를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되고 본 법만을 적용해야 한다.

단 치안유지법 시행 전에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행위와 치안유지법 시행 후에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령 제7호와 본 법을 비교하여 가벼운 쪽에 따라 처단한다.

제2절 제1조의 해석

제1관 제1조의 요지

- 치안유지법 1925.4, 법률 제46호
개정 1928.6, 칙령 제129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 2항의 미수죄는 그것을 벌한다.

본 조의 구성

본 조는 대일본 제국의 국체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근저에서 파괴하여 무정부주의·공산주의 등의 실행을 목적으로 이하 열기(列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벌한다.

- 1)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아래의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한다.
 - ① 결사를 조직한 자.
 - ②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
 - ③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 ④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 ⑤ 이상의 ①, ②, ③, ④의 행위를 하고 미수(未遂)로 끝난 자.
- 2)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
 - ① 결사를 조직한 자.
 - ② 결사에 가입한 자.
 - ③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 ④ 이상의 ①, ②, ③의 행위를 하고 미수로 끝난 자.

1. 국체 변혁의 의의

국체라는 것은 주권의 존재, 환연하면 통치권의 총람자(總攬者)가 몇 명인가의 문제이다. 즉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헌법 제1조). 천황은 통치권 총람자이다(헌법 제4조). 이처럼 우리 대일본제국의 국체는 만세일계의 천황에 의해 통치되는 군주국체이고 통치권은 모두 천황이 총괄한다. 이는 헌법의 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래의 역사상의 사실로 만대불역(萬代不易), 실로 천지와 함께 다함이 없는 국민의 확신이다.

그러므로 본 법 제1조에 국체의 변혁이라는 것은 일체의 권력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주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는 만세일계의 천황을 폐하고 다른 자를 통치권의 총람자로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대저 우리 만세일계의 천황의 통치권 총람이라는 사실에 변용을 가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통치권 총람의 사실에 해를 끼친 이상, 그 전부이든 일부이든 사물에 관계하는 영역에 관계하든 불문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통치권 행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본 법이 규율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체의 변혁에 관계하고 본 법이 정한 바와 같은 행위가 있더라도 그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이상, 다른 법규에 저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1) 조선의 독립과 국체의 변혁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제국의 한 지방에 대한 제국 통치권을 배척하고 정치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저 제국의 조선에 대한 통치권을 배척하여 조선의 독립을 기획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치안유지법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행위로 본 법의 소위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즉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은 우리 제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僭竊)하여 그 통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침해하려는 것이다. 즉 치안유지법의 소위 국체 변혁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동 취지 1930년 7월 21일 고등법원판결(주))

* 주 : 출판법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 사건

(1930년 7월 21일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판결이유〉

소위 원판에서 본 신간회 철산지부 설립 취지서를 열람하니 그 문사(文詞)가 교묘하고 완곡하다. 문장 중간에 “정치적으로 터럭만큼도 자유 없음”, “정치 야전의 장도에 선다” 등의 말이 있지

만, 그 모두(冒頭)에 “우리 2천만 동포 및 삼천리강산이 주인을 잃은 지 20년에 가깝고, 우리는 그 사이 무한한 압박과 착취를 받았다”라고 전제하며 혹은 “기미운동 아래 우리의 반항적 운동은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결정적 태도로는 파괴된 인간적 존재를 탈환하기 위한 최후의 일치단결이 있을 뿐, 즉 민족적 역량을 통합해서 이중삼중으로 묶인 가혹한 철선을 2천만 인의 움켜진 주먹으로 분쇄하는 데 있다”고 논하고 “신간회는 진실로 우리 조선에 있어서 모든 간생의 희망을 안고 가까운 장래에 위대한 날을 민중에 앞에 약속한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우리도 민족 간생의 길을 부설하고 우리의 신생(新生)을 발견하기 위함이다”고 논결한 것에 유의해서 전문을 통독한즉, 주된 목표로 하는 취지는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것은 우리 제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僭竊)해서 그 통치권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통치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즉 치안유지법에 소위 국체의 변혁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또 구한국 융희(隆熙) 3년 법률 제6호 출판법 12조 제1호에 소위 국현을 문란케 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하 생략)

2) 국체 변혁의 수단

국체의 변혁에는 그 수단, 방법을 물을 것도 없다. 다시 말해, 폭력으로써 우리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든, 형식상 평화적인 행동으로써 국체를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든 그 어느 쪽도 본 조에 해당한다. 폭행, 협박으로 황실에 위해를 가해서 ‘천황’이 주권자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직접 황실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천황’의 대권행사를 보필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폭행·협박·살해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행동을 저지하여 ‘천황’으로 하여금 대권행사를 어쩔 수 없이 모두 폐절(廢絕)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일종의 폭력으로서 국체 변혁의 일례이다. 또 무정부주의·공산주의의 결사의 폭력을 확대하고 국민 일반에게 그 사상을 주입하여 형식상으로는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롭게 ‘천황’의 대권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것은 폭력에 의하지 않는 국체의 변혁이다. 이처럼 국체의 변혁은 폭력에 의해 조현을 문란케 하는 소위 내란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 사유재산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사인(私人)이 재화에 대해 절대의 지배권을 가진다는 것을 시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위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관념이다. 이 제도는 재화의 소유에 관한 하나의 종합적 국민 공존의 율칙(律則)으로 단순히 재산 소유에 관한 개개의 지배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단일불가분의 관념이

다. 오늘날 모든 경제활동은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서 실행되고, 사회의 진보 또한 이 활동에 의거하는 일이 많다.

물(物)과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는 폐해가 동반하며, 사유재산제도는 현재의 사회생활에서 극히 필요하고 또한 유익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에 동반하는 폐해는 노력하여 없애야 한다. 요즘 입법상·행정상 이루어진 여러 사회정책은 거의 그 기초를 사유재산제도의 개선에 두고 있다. 이는 바로 그 폐해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제도의 폐해를 중시하고 이를 근저에서 파괴하려는 것은 논리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사회에 위험을 끼치고 국리민복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조에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제도를 파괴하려는 경우는 물론 그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 및 자본, 즉 생산자료 및 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생긴 결과, 즉 소지 재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유를 허락하지 않고 사회의 공유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주장은 물론, 협의에 있어서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 및 자본을 사회의 공유로 하는 것은 모두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사회정책상 토지의 국유, 광산·철도·전력·선박 등의 국유 또는 산업조합 설치, 조합원의 토지와 기타 생산설비를 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생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단지 재산의 사용 수익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아무리 대규모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방법은 그 여하를 묻는 것이 아니다. 환언하면 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언론 저작에 나가는 것과 폭력에 호소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진실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기 때문에 본조에 해당한다.(주)

* 주 : 국체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의의

(1929년 제389호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같은 해 5월 31일 대심원 제4형사부 판결)

1. 우리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임하시고 통치권을 총揽(總攬)하셔서 이를 국체로 삼는다. 치안유지법(1925년 법률 제46호 1928년 칙령 제129호) 제1조에 소위 국체의 의의 또한 이것이므로 제국에 무산계급 독재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행위는 즉 우리 국체의 변혁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기도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이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원칙 판결이 판시(判示)한 대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그 목적이 가능한 것을 설시(說示)할 필요가 없다.

2. 대저 제도는 국법을 도외시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유재산제도는 즉 재산의 사유를 국법이 인허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에서 생긴다. 우리 국법하에서도 역시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현저한 사실에 속한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관한 법의 추이·변천은 동시에 사유재산제도의 추이·변천에 귀속한다. 일정불변의 재산제도를 상상하는 것의 곤란함은 논지에서 말한 바와 같지만, 치안유지법(1925년 법률 제46호 1928년 칙령 제129호) 제1조에 소위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라는 것은 중요 재산의 사유에 관한 국법의 보호를 배척하고 우리 현행의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 판시처럼 모든 생산기관을 사회의 공유로 하고, 공산제도를 실현하려는 행위는 가령 공산제도의 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일절 재산사유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즉 전기 법조에 규정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의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판결에는 논한 바와 같은 불법이고, 또 기록을 조사한바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히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3. 결사의 의의

결사라는 것은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로 결합하는 총체적 동맹을 말한다. 그 공연의 결사라는 것과 비밀의 결사라는 것을 묻지 않아도, 비밀결사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계속적 결합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일시적 집합인 집회 같은 것은 결사라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사실상 일정 기간 계속 결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계속적 결합의 의사로서 결합하면 충분하다.

제2관 제1조의 죄

제1항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죄

제1. 결사조직죄

본 법 제1조 제1항 전단1은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것에서 성립한다. 결사조직법의 성립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창설행위

창설(創設)행위라는 것은 결사의 협의의 조직행위로서 즉 국체의 변혁을 존립의 목적으로 다수인을 공동 목적하에 규합하여 오늘날의 소위 공산주의·무정부주의 즉 마르크스, 레닌, 크로포트킨(Alekseevich Kropotkin) 등의 사상을 신조로 하는 계속적 단체를 결맹하는 준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무정부주의·공산주의 사상을 말하거나 혹은 동지를 권유·설득하고, 결사의 초안을 만들거나 혹은 구약(口約)을 하고, 주의 강령을 정하여 성립 후의 분담 부서를 정하는 등의 결사조직 준비행위를 포함하는 일체를 창설행위라고 한다.

2. 지지행위

결사조직죄의 성립에는 준비행위(창설행위)와 여기에서 말하는 지지행위 즉 창설행위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사를 조직하기에는 창설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지지행위(창설행위에 동반한 활동)라는 것이 필요하다.

지지행위라는 것은 준비행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 결사를 활동의 상태로 놓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결사를 결성하고, 장래 활동하고 확대 강화를 할 수 있는 지위로 두거나 혹은 창립을 완료하여 각 부의 활동 토대를 만들고, 사실상 각 구성원이 공통의 목적하에 결사하고 이 공통의 목적을 위한 결합이 시간적으로 계속성을 구유(具有)하는 데 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결사의 조직

위의 1, 2의 행위가 있어도 아직 결사·조직되기 이전에는 본죄의 성립이 아닌 본조 제3항의 미수죄를 성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반드시 결사가 조직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결사가 조직된다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을 말하며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의사(意思)연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반드시 단일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 종의 복합 혹은 장래 일정 기간에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정(更定)하는 것도 단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공동 목적일 수 있다.

더욱이 일반결사와 같이 주의 강령 같은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다수인의 결합인 이상 그 방법은 반드시 회합해서 결맹한 것과 문서, 구두에 의한 것이 진실로 결사의 사실인 이상 결사·조직되었다고 하는 데 지장 없다.

공동의 목적을 위한 결합이 시간적으로 계속성 있는 경우 창설·조직되었다고 말할